

성산업에 유입된 Legal Guide for
외국인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본 안내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 라 함은,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피해자'에 국한한다.
편의상, 책 표지를 제외한 모든 내용 안에는, '인신매매 피해자'라 총칭한다.

* 본 안내서는, 행정법상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고려하여 대체로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을 짜풀할 수 밖에 없었음을 알려둔다. 따라서, 본문
내용 안에는 부득이 '성매매 피해자'와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
- ▣ **에는 말** _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차혜령 변호사 4
 - ▣ **소개의 말** _ 두레방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박수미 소장 6

 - ▣ **용어 해설** 10
 - ▣ **표본 사례** 20
 - ▣ **도해** _ 폴리핀 연예인 송출 구조 28
- 

01 인신매매란 무엇인가?

- 1. 국제규범 32
 - 2. 국내법 33
 - 3. 인신매매 현황 34
 - 4. 참고 현황 35
- 

02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 1. 초기상담 44
 - 2. 긴급구조와 긴급보호 50
 - 3. 법적지원
 체류지원 52 / 형사사건 59 / 민사사건 84
 노동관계 87 / 행정제재처분 97
 - 4. 그 밖의 지원
 의료지원 101 / 자활지원 107 / 구국지원 111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의 한계와 도전 과제 113
- 

03 실제 사건 지원, 어떻게 했나? 118

-
- ▣ **참고자료** _ 상담 관련 서식 / 체류 관련 서류 예시 / 형사사건 관련 서류 예시 138

■ 여는말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차혜령 변호사

|||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는 ‘두레방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 인신매매 사례의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매뉴얼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면서 구상이 시작된 책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인신매매 사건의 피해자, 특히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은 두레방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두레방과 공감은 2010년 1월의 첫 기획회의에서 ‘법률안내서를 발간하여 인신매매 사건을 다룰 수 있는 NGO와 상담원, 활동가의 범위를 넓히고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론화하자는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에 관한 기존 자료와 현행 법률, 실제 인신 매매 상담 사례를 여러 차례 검토하고 연구하면서 책자에 담을 내용을 고민하고 본격적인 집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함께센터’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이 참여하여 큰 힘을 보태었습니다.

‘법률안내서’의 구성은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의 법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초기 상담, 긴급구조와 긴급보호, 의료지원, 자활지원에 관한 내용 뿐만

|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각 단체들이 썼던 서류들의 예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지원활동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모두 담아서, 내국인 성매매여성·이주여성·이주노동자를 지원한 경험은 있으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은 없는 단체나 활동가들도 이 '법률안내서'를 길잡이 삼아 직접 인신매매 피해자를 도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법률안내서'가 완성 단계에 이른 지금,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작은 책자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 현장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이 확산되기를, 또한 한국 사회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반드시 처벌되고 피해자는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소개의말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안내자 역할과 동시에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 두레방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박수미 소장 | |

이번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제작은, 본 시설이 처음 세워지고 정확히 6개월만에 착수한, 내부적으로는 매우 의미심장한 프로젝트였다. 두레방은 10년 넘게 기지촌 지역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여성들의 열악하고 불완전한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법률 사례들로 진척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결정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작년 2009년 외국인 전담 시설을 두레방이 맡아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법률 사례들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피해 사례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사실은 반가운 반면, 앞으로는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외국인 피해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쉬쉬할 수 없었던 더욱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단순히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실감하게 된 이상, 미봉책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었다.

|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

결국 기존 관련법 이상의 ‘대안적 정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 이와 같은 안내서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고작 이 작은 책자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고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외국인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돋는 안내자 역할로서, 동시에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이 한층 공론화될 수 있는 홍보 자료집으로나마 작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은 본 안내서가 각 대상들에게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하는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다.

인신매매 정의 규정에 대한 방향 제안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률 안내서’는 우선, 성매매 관련 NGO 활동가들과 GO 실무자들에게 권한다. 이번 안내서는 ‘인신매매’라는 용어를 과감하게 제목 안에 넣었다. 특히, 최근에 비로소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번 안내서는 그 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인신매매 정의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외국인 관련 사건에 한함) 국내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추후 인신매매 방지법이 내포해야 할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제안하고 있다.

■ 소개의말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기존 성매매 관련 단체 소속 상담원과 활동가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관심 유도

특별히, 이번 안내서는 기존 성매매 관련 단체의 상담원, 활동가들에게도 (잠재적 내담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목은 ‘인신매매’ 관련 안내서이지만, 실제로 본 안내서의 모든 법, 사례 등은 현재 시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 법률안내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다. 바로 이 점이, 본 매뉴얼이 미처 다 담아내지 못한 결정적인 결함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처음 기획 단계에서보다 구성 범위가 축소된 그 이유는, 어쩌면 인신매매 주제만큼 여전히 생소한 주제가 성매매 안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안내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 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자는 내용만큼은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답변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전국 각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의 연계 지원망 확보

대부분의 단체들이 본연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외국인들에게까지 접근하는 일에 대해 여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에는 잠재적 피해자들이 분포되어 있고, 따라서 지역 상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책자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전국적으로 공유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법적 지원을 각 지역 상담소와 연계하여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

수사기관, 출입국, 노동부 등 관련 정부 기관 담당자들의 공정한 해석, 판단 기여

그 동안 외국인 사건을 함께 담당했던 수사기관 등 관련 정부 기관 담당자 대부분이 한결같이 외국인 사건의 난해함과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 이유로는, 1. 의사소통의 어려움 2.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 3. 피의자들에 대한 정보, 증거가 없어,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이다. 대상이 외국인이라면, 내국인에 비해 부수적으로 신경 쓰고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인은 실무들에게 반가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많은 담당자들이 ‘평등의 원칙 아래’ 외국인을 ‘지나치게’ 내국인 기준에 맞춰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있을 만한 쉼터나 법률 지원을 받을 만한 상담소가 있는지 몰랐다는 의견을 들을 때마다, 수사 기관 등 정부 관련 기관과의 밀접한 협력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한다.

본 안내서는 법률 내용 뿐만 아니라 현황 및 사례, 지원 시스템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재 담당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관련 사건을 담당하거나 직접 수사하고 있는 관계 기관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직접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공감과 함께 만들어보고 싶다”는 대시에, 바로 이 곳 평택까지 찾아와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며 기획부터, 제작 단계까지 책임을 맡아주신 공감과 안내서 제작의 모든 과정에 끝까지 동참해주시고,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모아주신, 다시 함께센터와 살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용어해설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용어 해설

?!
!

에스코트 (escort)

공항 내 출입국 심사시, 미비한 서류로 인해 심사에 통과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브로커, 매니저 등의 동행, 통화, 사전 지시 등을 통해 출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불법 행위를 가리킨다.

필리핀 연예인은 필리핀 공항 출입국을 통과할 때, POLO(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가 인증한 외국 고용 업체가, POEA(필리핀 해외고용청)의 허가받은 예이전시를 통해 요청받은 연예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자신이 POEA에 등록된 연예인임을 확인하는 OEC(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확인서는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의 비자 신청 서류에 포함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입국을 위한 연예인 E6비자를 받는데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필리핀 현행 법상으로는 출국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escort는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것이다.

|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

바파인 (bar fine)

바파인은 손님이 업주에게 자불하는, 햌서나 접대부, 종업원에 대한 일종의 벌금(fine) 제도이다. 바파인은 손님이 요청하여 업소에 고용된 자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것이고, 대신 그 '손해'를 돈으로 갚는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다. 사실 바파인은 영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2차(성매매를 전제로 하는)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업소 주인에게 돈으로 변상하는 것이 목적(뜻의 어원을 살펴보면)이었다. 즉 바파인은 성매매를 뜻한다. 특히 미군 부대 근처의 클럽에서는 클럽 문 앞에 절대 바파인이 없다는 표시(NO BARFINE)를 하고 있을 정도로 바파인이라는 표현은, (영어권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상징하는 불법적·비도덕적 표현인 것이다.

바파인은 손님과 여성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성들의 합의 없이도 손님이 업주에게 돈을 지불하면 여성들은 손님과 함께 나가야 한다. 손님들은 바파인에 해당되는 돈을 여성에게 직접 건네면서 데리고 나가겠다는 뜻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여성은 그때 자신이 바파인의 대상이 된 것을 알아채게 된다. 여성들이 직접 손님에게 돈을 받아 업주에게 건네면 바파인은 성사된다. 업주들은 더 많은 손님을 받아 수입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바파인 시간대를 정하기도 한다. 12시 이후로 정하는 경우, 바파인을 목적으로 업소에 오는 손님들은 11시가 넘어서 바(bar)나 클럽을 찾는다. 업주나 여성들은 이때 오는 손님들을 바파인을 목적으로 오는 손님으로 파악한다.

바파인 비용을 지불한 손님과 여성들은 일단 함께 나가야 한다. 도망가거나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손님은 업주에게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여성은 그 돈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 그것이 벌금이 되는

■ 용어해설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것이고, 아마도 가까운 시일 안에 그 여성은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을 요구당할 것이다. 업소가 정한 시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바파인을 지불한 손님은 보통 오전 10시, 12시, 오후 2시 전까지 여성은 업소(숙소)로 돌려보내야 한다.

바파인의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보통 200,000~300,000원 이상이며, 거제 옥포에서는 350,000원이다. 인원 수에 맞는 돈만 낸다면, 1명 이상을 데리고 나가기도 한다. 바로 호텔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보통 한국 사람들의 경우이고, 외국인들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뒤에 호텔로 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역에 따라 호텔이 아니라 자신의 숙소에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갖기도 한다. 현재는 쿼터제도가 발달되어, 바파인 비용을 입주가 여성에게 직접 당일 지불하는 경우는 드물다. 바파인 비용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20점(40,000원, 손님이 지불한 바파인 비용 200,000원 기준)을 인정하고, 해당 주간 결산에 포함시켜, 보름 또는 월말에 주스 포인트와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고 있다. 여성은 성매매를 통해 쿼터를 채우게 된다. 왜냐하면 쿼터는 몇 안되는 손님들에게 주스 판매로만 채울 수는 없는 양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파인을 쿼터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스 쿼터 또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또는 조장하거나 유도하고 있는) 시스템인 셈이다. 바파인은 (한번에) 주스 20~30잔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외국인들의 경우, 특히 미군들은 매번 바파인 상대를 달리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의 바파인을 지급하여 여자 친구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

|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

가는 경우가 많다. 미군 당국은 한 미군이 (당시 클럽에서 일하는데 오후 2시 까지 숙소로 돌아오지 못한) 여자친구를 대신하여 클럽 업주에게 대신 벌금을 낸 경우도 바파인으로 인정, 처벌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주시걸 (juicy girl)

주시걸, 바걸(bar girl)들의 역할은 손님과 말상대를 하거나 같이 포켓볼 등과 같은 게임을 하면서 주스를 손님으로부터 얻어 마셔야 하는 일이다. 즉, 이들의 행위는 순진히 업소의 매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주시걸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드물다. 주시걸은 계속적으로 손님들이 자신에게 주스를 사도록 유도해야 한다. 어떤 클럽은, 클럽 내 규칙을 통해 주스를 사지 않는 손님들과 주시걸과의 접촉을 금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주시걸과의 대화 시간을 10~15분으로 제한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함께 이야기하려면 주스를 사도록 유도하고 있다.

바 또는 클럽에서의 처음(특히,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필리핀, 태국 등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성행했다.) 여성 접대부들의 역할이, 손님들의 이같은 오락과 유흥을 함께 즐기도록 하는 목적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주스, 술 등 주류의 매상을 올리기 위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주시걸들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입주들은 주시걸들에게 일정양의 quota(쿼터, 몫)를 채울 것을 요구하면서, 주시걸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시걸 스스로 성적 서비스를 감행하도록 조장하기도 한다. 술 대신 주스를 마시는 것은,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미군들이고 혹시 손님들은 술을 먹더라도 주시걸들은 술에 취해 많은 양의 주스를 먹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술을

■ 용어해설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규칙이다. 하지만 주시걸들도 술을 같이 마시게 하여 매상을 같이 올리게 하는 지역도 있다. (미군전용클럽제외) 이같은 경우에도, 술에 취하지 않도록 약을 먹게 하거나, 술에 취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경우가 있다.

랩댄스 (lap dance)

손님의 무릎에 앉아 추는 춤으로, 손님을 성적으로 자극하는 춤이다. 주로 평상복 차림이 아닌, 비키니 등 이한 복장으로 손님들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랩댄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돈을 내야 하고, 여성들 또한 음악이 끝날 때까지만, 또는 10~20분 정도의 시간동안 춤을 추게 된다. 어떤 클럽은 랩댄스를 추는 동안은 여성의 몸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도 있다.

주스 할당제와 쿼터 시스템

한국어로는 주스 할당제라 풀이하며, 클럽 또는 바에서 일하는 주시걸이나 엔터테이너들에게는 쿼터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최소한의 정해진 할당량(몫)으로서, 일주일에 70~80잔, 한달에 300~400잔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주스 할당제는 2:8, 3:7 정도로 이윤이 나눠진다. 예를 들면, 만월짜리 주스 한 잔에, 주시걸은 2,000원을 얻게 되며, 나머지는 업주의 이윤이 된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채운 자기의 몫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한 달 수입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인 기획사로부터 받는 월급은 고작해야

|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

20~30만원이다. 그것도 계약이 끝나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질적인 수입원은 사업장(가수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공연장’)인 업소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 전부인 셈이다. 이것마저 주스 퀴터를 채우지 못해 받지 못한다면 한국으로의 취업이 실패하는 것이다. 현재는 (퀴터 불이행으로 인한) 별도의 벌금은 없는 것으로 알지만, 그동안 채운 퀴터마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 매우 큰 손실이다. 이 외에도 여성들은 퀴터 불이행으로 인해 여러 가지 압박과 위협을 받는다.

1. 업소에서 매일 밤 개인이 올린 매상을 체크하며, ‘제대로 일하지 못한’ 여성들은 2. 구박과 욕설을 견뎌야 하며, 이 퀴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 매상을 잘 올리지 못하는 주시걸들은 3. 다른 곳으로 보내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

업주는 해당 기획사에 연락하여 이 여성을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고, 주시걸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된다.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오히려 해당 여성들에게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거의 모든 업소가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옮겨지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일 뿐이며 또 다시 퀴터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손님을 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뒤따른다.

또한 심지어 기획사에서는 여성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곳(성매매 강요·감시·통제가 심하다고 악명 높은 지역, 거제도 옥포나 동두천 턱거리 등. 특히 거리상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옥포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여성들도 매우 두려워하는 곳이다)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오래된 여성은 자신(업주)의 업소로 옮겨질 때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매상을 올릴 수

■ 용어해설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있는 능력이 없는 등) 여성이라는 판단 하에 기획사에서도 적절한 지역에 여성들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차라리 업주들은 아무런 경험도 없는, 새로운(New) 여성을 선호하며, 주스 퀴너를 채우지 못해 업소에서 쫓겨난 여성들은 자리가 비어있는 업소(자리가 빈 업소는, 그 곳 여성들이 도망했을 가능성이 많다. 즉 문제가 있는 업소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이 일하기 적합한 업소들은 여성들이 부족할 틈도 없이 즉시 여성들이 배치될 수 있다)로 옮겨가야 한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매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여성들을 옮기려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한 준비와 판단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기획사는 여성들을 인계하는 역할을 전혀 관계없는 타인에게 미루는 경우도 있으며, 4~5시간 혼자 버스를 태워 거제도까지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터미널부터는 해당 업소 관계자가 데리러 나온다.

특히, 대부분의 업주와 기획사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업주들은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에 표기된 여성들의 정보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짐작할 수 있으며, 기획사에서도 거절당할 업소에는 여성들을 당연히 배치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도망가거나 악명이 높아 여성들이 들어가기 기피하는 곳에는 늘 여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하루빨리 여성들을 인계하는 것이 기획사로서는 보다 간편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매상을 잘 채우는 여성들에게는 휴일을 주거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시스템은, 클럽 안에서의 경쟁을 유발하기도 하여 매상을 올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여성들에게 강요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

특히 업주들은 성매매 알선의 책임, 성구매자의 성매매 목적의 금품 수수 등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교묘한 수법으로 이 같은 주스 퀘터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번에 주스 비용으로 20~30잔(200,000~300,000원에 해당) 이상의 매상, 즉 바파인 비용에 해당되는 매상을 올려준 손님에게는 주시걸과 나갈 수 있는 바파인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즉, 성매매 하기를 원하는 손님은 성매매 목적으로 돈을 낼 필요 없이 주스 등 주류 판매 실적만 올려주면, 암암리에 업주와 손님은 스스로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서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포인트

주시걸이 채워야 하는 할당량을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다. 주스 1잔을 1점, 1포인트로 생각하면 된다. 한 달에 300~400점을 채우기 위해 포인트에 해당되는 주스 량을 채워야 하는 시스템이다. 한 달은 물론이고, 일주일 동안에 80잔~100잔까지도 채워서 안정적인 매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손님이 먹는 주스를 포함하지 않고 여성에게 사준 주스만 포함된다.

프로모션, 프로모터

프로모션 또는 프로모터는 필리핀 정부 또는 개인 엔터테이너들에게는 해외 고용업체를 뜻한다. 한국 프로모션은 현지 엔터테이너들을 현지 리크루트에 이전시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직접 현지로 나와 활동하며 엔터테이너를 결정

■ 용어해설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하는 프로모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필리핀 현행법으로는 불법적 행위로 간주된다.

에이전트

현지인을 모집하는 현지인 개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여 필리핀 해외 아주 노동청을 거쳐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 모집책이다.

리크루터

에이전트가 엔터테이너와 한국인 프로모터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리크루터는 에이전트가 밀집되어 있는 마닐라 외 지방 도시의 엔터테이너들을 에이전트와 닿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VTR

외국인 엔터테이너들은 한국 정부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video test recording’ 노래 실력 평가를 위한 영상물을 제출하여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영상물 테스트에서 통과되어 추천 승인을 받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6

예술 흥행 비자, 대표적으로 예술 연예(E-6-1), 호텔 유흥(E-6-2), 운동

|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

선수(E-6-3) 자격으로 입국하고 있다.

런치 시스템(lunch system), 런치 데이트

성매매가 주로 밤에 이루어지고 업주와 구매자가 성매매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법적 개념을 벗어나기 위해 전날 밤 일정량의 주류 등 매상을 올려주는 손님에게 다음 날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여종업원을 테리고 나가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맺는 등, 그 시간 만큼은 손님이 여종업원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매니저

외국인 전용 클럽업소에서 일하는 엔터테이너들에게는 적어도 3명 이상의 매니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필리핀법상 불법 경로를 통한 경우로서 현지인 애이전트, 한국 프로모션 매니저, 클럽 내 매니저들이 엔터테이너들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마마상

보통 업주들이 직접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중간 관리자의 역할로서 마마상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영어가 가능한 한국인 여성인 마마상을 하여, 손님들의 바파인(성매매)을 위해 클럽 내 종업원(접대부, 주시걸, 바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 표본사례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표본 사례

?!

나의 이름은 로잘린이고 23살이며, 필리핀 다바오에서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좋아 노래를 즐겨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의 집안 형편은 매우 좋지 않아, 부모님을 도와 어린 형제들을 돌보느라 대학을 마치지 못한 채 쇼핑몰 핸드폰 가게에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졌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낸시의 사촌을 통해서 마닐라 A 기획사 리크루터 빙을 소개받았습니다. 나는 그의 집에 노래 테스트를 받기 위해 갔습니다. 그 때 빙이 A 기획사의 양경이라는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고, 나는 양경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노래 실력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매니저 양경은 나의 목소리를 칭찬했고, 그리곤 3개월 후에 나는 A 기획사가 있는 마닐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 도착했을 때 다른 여성들이 한국인 프로모터에게 발탁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운이 좋게도 한국인 프로모터가 저를 선택했고, 그는 VTR(video test recording, 노래 실력 평가를 위한 영상물)에 통과하기 위해 잘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저의 노래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VTR에 합격했고, 바로 기획사와 계약을

|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기획사에서 비자 만들 시간이 촉박 하다면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로만 된 계약서와 그 외 몇 가지 서류에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서명을 했습니다.

기획사의 매니저는 “이제 한국에 가서 가수로 일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 한국에는 최저 월급 제도가 있어서, 계약서에 그렇게(910,000원) 명시 한 것 뿐, 실제로는 250달러(약 25만 원)를 받게 될 것이다. 1년 계약이며, 중간에 그만 둘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 하루 전, A기획사 사무실에서 나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모든 비용은 두 달 동안 받은 월급에서 공세할 것이고, 한국 클럽에서 일할 때 노래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손님들에게 술을 접대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 곳에는 나를 선택한 미스터 김(한국의 Y 프로모션 사장임과 동시에, 프로모터)이 같이 있었는데, 미스터 김은 필리핀에 있는 A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들을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뽑았습니다. 또한 A 에이전시 직원은, “한국에서의



■ 표본사례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업무는 그리 어렵지 않으며, 오히려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팁도 많이 챙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절대로 강제적인 성매매는 없으며, 마음에 드는 손님이 있으면 함께 데이트를 즐기고 밤에 함께 나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날 나는 한국인 프로모터 미스터 김을 필리핀 공항에서 만났고, 기획사 직원이 일러준 대로 여권을 뺀 나머지 서류들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한국인 프로모터는 직접 나를 필리핀 공항에서 한국 공항까지 에스코트 했는데, 이것은 내가 POEA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따라서 미비한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항 출입국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프로모터가 여권을 압수하려고 했

습니다. “왜 여권을 달라”고 하니며 보여주니, 그는 그대로 내 여권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는 “네가 도망갈지 몰라서 내가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날 5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미스터 김은 어떤 한국인 직원 한 사람을 ‘나의 매니저’라 소개했고, 미스터 김의 매니저가 나를 평택의 M클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

그곳에 도착하니 바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피곤했지만 동료가 건네주는 옷을 입고 클럽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직접 손님 앞에서 춤추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브라와 팬티만 입고 막대기(봉) 춤을 추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한편 동료 여성들은 그들의 쿼터를 채우기 위해, 매우 야한 랩댄스(lap dance, 손님 무릎에서 추는 선정적인 춤)를 매우 능숙하게 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료들은 “이렇게 해서 주스 쿼터를 만회해야 하고, 바피인을 나가면 더 쉽게 쿼터를 채울 수 있다”고 나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클럽 주인이 나의 몸을 보더니 섹시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곳에서 밤 10시까지 일하다가 K클럽으로 보내졌고, 그 곳에서 30분 일하다가 11시에 또 다른 D클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곳에서 12까지 일했고 D클럽에서는 한 달 정도 일했습니다. D클럽 주인이 프로모터한테 나의 여권을 달라고 했지만 매니저는 주지 않았고, 나는 또 다시 다른 클럽으로 옮겨졌습니다.

■ 표본사례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그렇게 나는 거제도 옥포동의 B클럽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했습니다. 매니저는 버스 터미널에 다른 한국인 매니저가 나와 있을 거라고만 말하고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가버렸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도착했는데, 주인은 나한테 손님들을 잘 접대해야 하며 술과 주스를 많이 마셔야 되며, 성매매도 해야 된다며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권도 없었고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기 때문에 일단 그의 지시를 따르다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 이곳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제도 B 클럽에서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2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일하고 금요일 및 토요일은 2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일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손님들이 돈을 내면 우리들은 바파인(성매매)을 하기 위해 손님들과 호텔에 가야 했습니다. 바파인을 위해 손님들은 30만원부터 35만원까지 돈을 냈고, 우리들은 그 돈에서 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돈은 그날 바로 바로 지급되지 않았고, quota(쿼터)에 포함되어 400점을 다 채워야만 그 동안 채운 내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클럽 주인은 야한 옷 및 악세사리를 가져와 강제로 구입하게 했으며, 음식과 의료비도 내 스스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곳 클럽에는 CCTV가 6개 있어서 클럽 입구와 내부를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조사하러 올 경우, 클럽 매니저는 바텐더들한테 연락하여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여성들을 일사천리로 숙소에 보냈습니다. 오래된 동료들은 업주와 매니저, 마마상에게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

그곳에는 또한 퀘터(quota)가 한 달에 400점(10,000원 짜리 주스 한잔은 1점이며, 20,000원 짜리 술 한 잔은 2점. 1점은 2,000원으로 환산)인데, 휴일은 오로지 퀘터를 다 채웠을 때만 있고, 퀘터를 다 못 채우면 휴일은 물론 그동안 채운 퀘터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매우 엄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 클럽 주인은 여성들한테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약물과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다이어트 약을 강제로 복용시켰는데, 그것을 먹으면 완전히 정신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음식과 의료비는 내 부담이었으며, 심지어 매우 아파 응급실을 찾을 때도 클럽 사장은 물론 프로모터도 병원비를 지불하거나 병원에 데려다주지 조차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매니저한테 일이 너무 힘들고, 클럽에서 성매매도 해야 한다고 항의한 뒤, 다른 클럽으로 옮겨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개월 일하다가, 평택에 있는 C클럽(외국인 전용클럽)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어느 다른 클럽과 다르지 않았고, 이제는 여러 클럽을 전전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나는 한번도 노래를 불



■ 표본사례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려본 적도 없었고, 남성 고객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바에서 일하는 주스걸이나 성매매 하는 여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프로모터에게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클럽에서 도망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동안 일했던 월급까지 받지 못할까봐 나올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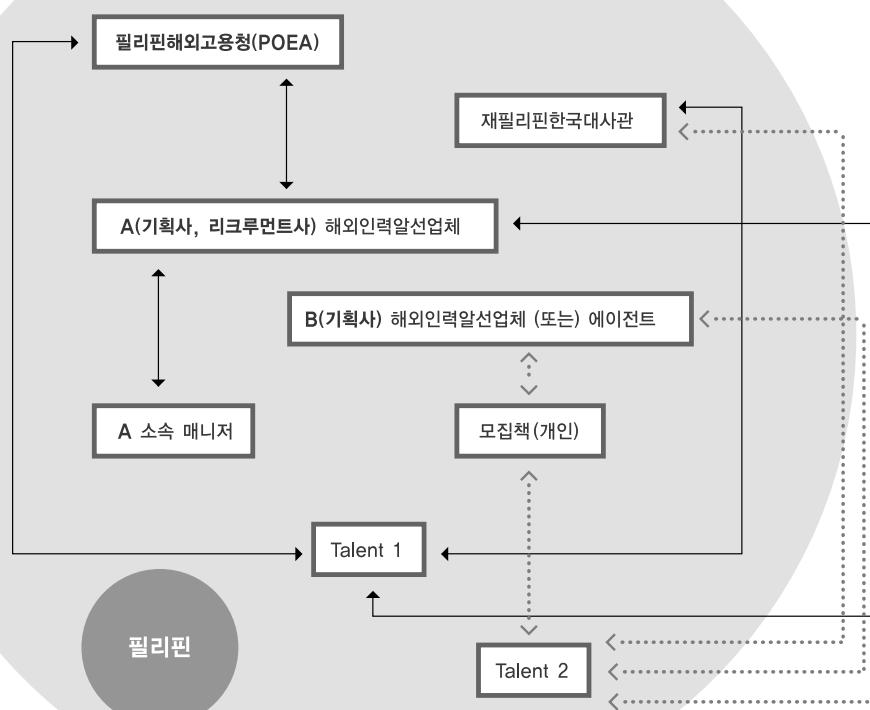
하지만 결정적으로 얼마 전, 내가 퀴터를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주가 나를 다른 클럽으로 옮겼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악명 높은 동두천의 T지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나는 빨리 도망가야 했습니다. 늘 업주들과 프로모터가 “클럽을 나오게 되면 너는 분명 불법 체류 신세가 될 것”이라고, 내가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에 대해 위협해 왔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잠든 이른 아침, 아무도 모르게 숙소로부터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

■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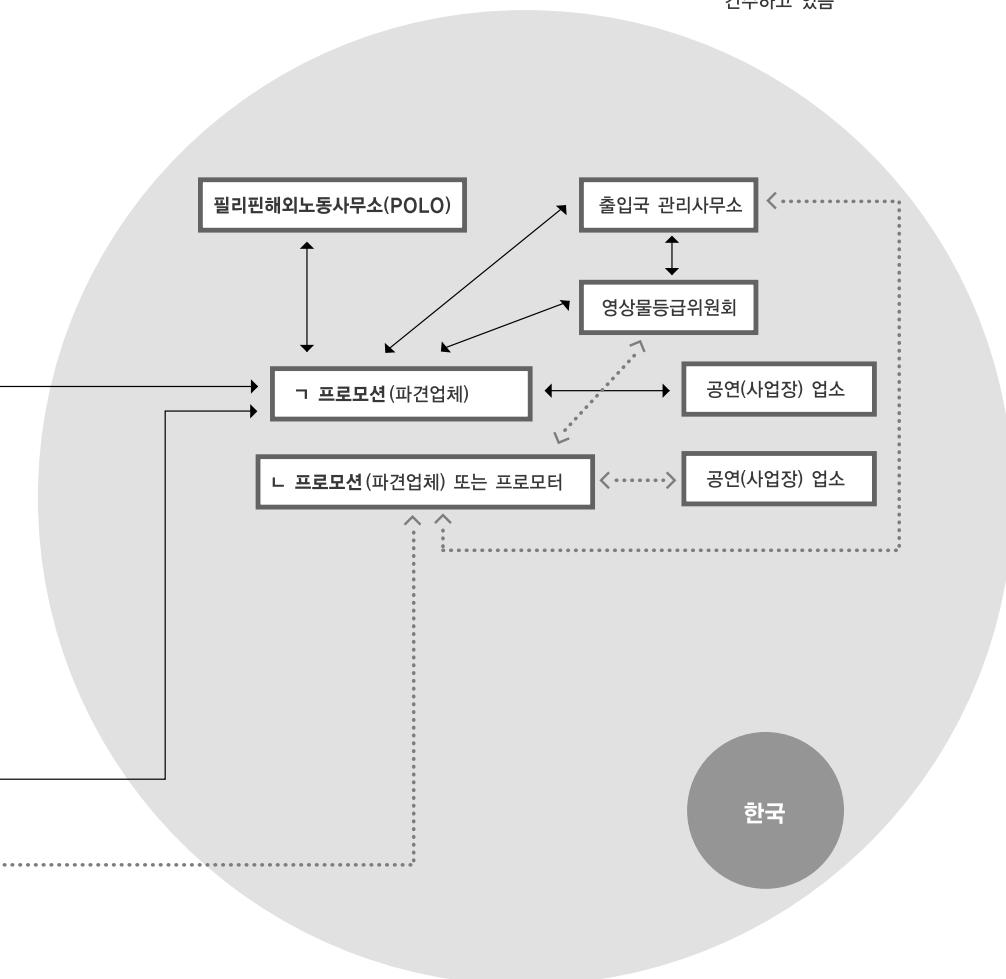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필리핀 연예인 송출 구조



|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

<.....> 로 표시는 경로는
필리핀 정부가 합법적인
경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 인신매매란 무엇인가?

1. 국제규범
2. 국내법
3. 인신매매 현황

01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1. 국제규범

인신매매의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규범은 UN의 주도하에 2000년에 체결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al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이며, 현재 각국의 인신매매 관련 입법의 준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의정서에서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 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또는 혜택의 제공 또는 접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위 의정서는 “인신매매에 있어서 정의조항에서 설시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착취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무의미하다”라고 규정하여, 인신매매에서 정의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인신매매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¹⁾ 즉, 인신매매란 착취(성매매, 성착취, 강제노동, 강제 결혼, 장기매매 등 포함)를 목적으로 강제적 수단, 기망적 수단, 권리이나 당

1) Article 3 Use of terms

- (a) “Trafficking in persons” shall mean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u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 (b) The consent of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to the intended exploitation set forth in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shall be irrelevant where any of the means set forth in subparagraph (a) have been used

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이용 등의 수단을 통하여 사람을 모집, 인계, 이전, 은닉, 인수하는 포괄적인 과정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2. 국내법

현재 우리나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²⁹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들 등의 촬영·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로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와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 나. 구강·항문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_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나_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미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미약·향장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다_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로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라_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위 정의규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심신미약자인 경우 가목의 수단 외에 피해자의 보호감독자에 대한 재산상이익의 제공도 인신매매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지배·관리를 통한 인계·인수행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집·이동·은닉행위도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특히 이 법은 다음과 같이 선불금, 여권 압수 등의 수단으로 대상자의 이탈을 제지한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배·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지배·관리 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작업을 일으키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3. 인신매매 현황

1)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 상담 접수 현황

(2008~2009년도 기준, 단 2010년도는 매뉴얼 제작에 관여한 단체-***로 표시-에 한해 7월 상반기까지 집계한 것임)

① 지역별

사건 발생 지역의 기준은 운송(이송) 지역을 뜻하는 것이며, 1명의 피해자가 서울, 경기, 경남, 제주로 이송된 경우 각 지역 건수 안에 각각 표시한 것임.

단위 : 건

지역/연도	서울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제주	전북	총계
2008	2	47	0	0	0	0	2	51
2009	0	111	3	2	0	0	6	122
2010	1	63	3	2	2	1	0	82

출처 : 두레방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 (총 109명), 전북여성안전지원센터 (총 7명)

** 두레방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총 106명) ** 실봄나눔 여성안전지원센터 (총 4명) ** 디시클럽센터 (총 4명)

② 국적 및 체류 자격

단위 : 명

연도	국적		체류자격	
	국적	인구수	체류자격	인구수
2008년	필리핀	50	E-6-2	51
	러시아	1	F-2-1	0
	베트남	0	C-3	0
	기타	0	기타	0
	총계	51	총계	51
2009년	필리핀	114	E-6-2	112
	러시아	2	F-2-1	3
	베트남	0	C-3	1
	기타	0	기타	0
	총계	116	총계	116
2010년	필리핀	65	E-6-2	62
	러시아	0	F-2-1	2
	베트남	0	C-3	1
	기타	0	기타	0
	총계	65	총계	65

4. 참고 현황

위의 상담 접수 현황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E-6-2(예술홍행)사중 소지자들이 기망, 유혹, 사기에 의해 유인되어 입국 후 성매매, 성착취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6-2사중에 대한 추천 현황을 통해 어떤 국적의 사람들이 전국의 어떤 지역으로 배치, 이송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 연감 (<http://www.knrb.or.kr/> 공연추천현황, 지역, 장소 등)

① 지역별 (2008~2009년)

지역	2008신규 ^{3) 추천}	2008변경 ^{4) 추천}	2009신규추천
서울	327	748	125
경기	1,226	1,030	1,105
인천	68	156	23
대구	155	283	145
충북	36	54	25
충남	24	51	19
대전	46	67	23
경북	113	170	143
경남	203	260	184
강원	35	112	26
부산	122	194	134
광주	27	51	44
전북	113	69	167
전남	29	17	39
울산	20	99	27
제주	59	64	85
계	2,603	3,425	2,314

② 관광업소 공연 국적별 통계

단위 : 건/ (명)

구분	국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1	미국	10(10)	15(17)	10(14)	5(9)	40(50)
2	러시아	43(76)	45(73)	22(36)	26(34)	136(219)
3	필리핀	1,332(1,928)	1,737(2,402)	1,687(2,635)	1,997(2,870)	6,753(9,835)
4	일본	15(134)	3(3)	0(0)	1(3)	19(140)
5	중국	49(252)	57(174)	66(171)	30(80)	202(677)
6	우즈벡	16(19)	4(5)	2(3)	1(2)	23(29)
7	키르기스탄	10(19)	2(3)	0(0)	3(4)	15(26)
8	우크라이나	17(33)	6(16)	4(8)	9(18)	36(75)
9	벨라루스	1(5)	4(8)	3(5)	0(0)	8(18)
10	불가리아	28(68)	18(38)	9(18)	8(17)	63(141)

3) 처음 영등위 추천 심사를 위해 보고된 해당 업소 지역을 기준으로 함.

4) 신규 추천 후 업소, 인원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다시 영등위의 추천을 받아야 함, 간별로 모두 접두한 것임.

구분	국가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계
11	프랑스	1(1)	0(0)	0(0)	0(0)	1(1)
12	스페인	0(0)	3(4)	0(0)	0(0)	3(4)
13	몽골	2(9)	2(6)	0(0)	0(0)	4(15)
14	영국	2(4)	7(9)	2(2)	2(4)	13(19)
15	이탈리아	0(0)	1(1)	1(1)	0(0)	2(2)
16	독일	0(0)	2(3)	0(0)	0(0)	2(3)
17	호주	1(1)	2(4)	0(0)	0(0)	3(5)
18	방글라데시	1(5)	0(0)	0(0)	0(0)	1(5)
19	아르헨티나	0(0)	1(2)	1(2)	0(0)	2(4)
20	벨기에	0(0)	1(1)	0(0)	0(0)	1(1)
21	캐나다	5(16)	4(15)	1(1)	3(3)	13(35)
22	기타국가	13(29)	12(27)	4(10)	1(6)	30(72)
23	다국적	8(85)	6(48)	6(49)	9(72)	29(254)
계		1,554(2,694)	1,932(2,859)	1,818(2,955)	2,095(3,122)	7,399(11,630)

③ 필리핀 해외이주고용노동청 (POEA) 등록 외국인 연예인과 한국 출입국 외국인 연예인 입국자 통계

연도	전체입국자수 ⁽¹⁾	필리핀 ⁽²⁾	POEA등록 한국입국 필리핀연예인 숫자 ⁽³⁾
1993	1,434	452	153
1994	649	258	189
1995	1,009	421	28
1996	1,550	601	5
1997	2,211	926	51
1998	2,105	898	46
1999	4,486	1,225	47
2000	7,044	1,849	3
2001	8,586	2,051	94
2002	6,452	1,208	257
2003	4,640	1,375	237
2004	3,943	2,215	625
2005	4,759	2,381	687
2006	4,518	1,900	487

연도	전체입국자수 ⁽¹⁾	필리핀 ⁽⁺⁾	POEA 등록 한국입국 필리핀 연예인 숫자 ⁽²⁾
2007	4,185	2,048	1350
2008	4,845	2,332	1020
2009	4,577	2,505	865

(1, 1-1) : 법무부 외국인 정책 본부(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2) 1993~2005 통계는 필리핀 해외 주고용노동청(POEA)의 OFW Deployment per Country and skill for Year, 2006~2009년 통계는 2010년도 공감과 두레방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서 토요타 기금으로 진행한 “성산업에 유입되는 필리핀 아주 연예인 송출 과정에 대한 현지 조사” 당시 POEA 담당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입수한 자료임.

시사점 : 위의 통계의 오차는, 송출국인 필리핀과 유입국인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연예인의 통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송출국인 필리핀 정부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연예인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송출국인 필리핀 정부의 법에서는 위법일지 모르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당국에서 정한 추천 절차만 통과하면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의 해당 인력 송출 국가의 해외 아주 관련 정책을 간과하는 태도로 인해 현지의 브로커, 에이전트, 에이전시들이 필리핀 정부의 허가 없이,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신을 매매·수수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1. 초기상담
2. 긴급구조와 긴급보호
3. 법적지원
4. 그밖의 지원

02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피해여성이 외국인인 경우 언어, 체류자격 등 여러 가지 막막한 문제들로 당황하기 쉽다. 그러나 아무리 언어적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상담자가 여성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노력하며 경청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상담자의 그런 마음은 늘 통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횡설수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여성에게 믿음직한 태도로 이야기를 듣고 질문해야 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의 경우 대부분 본국에서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한국 취업을 선택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여성들은 법률지원을 받은 후 귀국을 하기보다는, 피해 사실을 그냥 묻어둔 채, 한국에서 공장 취업 등으로 계속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업소에서 나온 여성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E-6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형사고소를 선택할 경우 경제적 활동이 불가한 G-1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체류자격의 한계에 대해 내담자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 함께 여성들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성매매피해 여성의 성매매에서 벗어난 후, 미등록 이주민으로 한국에서 일하다가 강제출국 당하는 또 한 번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역은 지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법률지원이든, 의료지원이든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약간의 한국어가 가능하다고 해도 상담원과의 라포 형성과 가깝없이 피해사실을 밝하기 위해서는 유창한 통역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 상담소에는 외국어가 가능한 상담원이 상근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활동가 양성, 연대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필요시 통역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해도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들은 본인이 타국에서 성매매, 위장결혼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의 지위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기 때문에 한국사람보다는 (아무리 업주나 마담이라고 해도) 고향 사람을 더 신뢰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무작정 여성들을 탓할 수는 없으며, 이렇듯 여성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유창한 통역을 활용해 여성들에게 지원을 정확하고 자세히 소개하여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tip!



지원비용 문제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 등 관련 단체를 통하여 여성들에게 1인당 760 만원의 구조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의료, 법률, 직업 훈련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원된다. 그러나 외국인을 지원함에 있어서 보험이 안 되는 의료비, 통번역비, 관계 기관 조사 등 행정비 등 내국인에 비해 비용지출 요소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한도액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직업 훈련 또한 일반 사설 학원을 다닐 경우 언어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점은 실제적으로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활용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1. 초기상담

1) 전화상담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의 경우는 더욱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전화를 걸어올 것이므로 외국어로 물어오는 경우 당황하거나 통역을 구하기 위해 설불리 전화를 끊는 것은 되도록 지양한다.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내담자의 경우 우리 말로라도 일단 침착하게 내담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내담자가 영어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 영어가 가능하다면 영어 가능자에게 넘기거나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즉석에서 현장 3자통화가 가능한 상담소 등을 연결하여 연결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내담자 주위에 내담자의 말을 한국어로 전달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다음은 주요 나라의 간단한 몇가지 첫 인사말 등이다.

주요나라의 간단한 첫 인사말



한국어

안녕하세요. 성매매피해상담소인 다시함께센터입니다.

어떤 일로 전화하셨나요?



영어

Hello, This is Dasi Hamkke Center. May I help you?

헬로, 디스 이즈 다시 함께 센터. 메이 아이 헬프 유? 어떤 일로 전화하셨나요?



베트남어

Xin chào. Đây là trung tâm tư vấn cho các nạn nhân mại dâm, vấn đề của bạn là gì?
신짜오. 더이 라 쟁법 뜨 번 쪼 각 난 낸 마이 점. 반 데 꾸아 반 라 지?



중국어

你好。这里是性交易受害者咨询中心。为了什么事情打来电话？

니하오. 씨리스 성지아오이 쇼우하이아 쓰친쭝신. 웨이러 선머스칭 달라이 미엔화

你好。这里是性交易受害者咨询中心。要帮忙吗？

니하오. 씨리스 성지아오이 쇼우하이아 쓰친쭝신. 웨이러 선머스칭 달라이 미엔화



필리핀어

Hello. Dasi Hamkke Center. Ano po ang maitutulong namin sa inyo?

헬로. 다시 함께 센터. 아노 포 앙 마이투톨롱 나민 사 인요?



러시아어

Здравствуйте, это консультация жертв секс-торговли Даши Намке Центр.

Что с вами случилось?

즈드라스트부이, 에따 깐슬따찌야 쥘르트브 세스-따르고블리 다시함께 뜨르.



한국어

한국어나 영어를 하실 수 있나요?

끊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통역을 연결하겠습니다.



영어

Can you speak English or Korean? Hold on , please. I will connect this call to translator's line.

캔 유 스 잉글리쉬 투 코리안? 홀던 플리즈, 애 월 커넥 디스 폴 투 트랜스레이터스 라인.



베트남어

Bạn có nói được tiếng Hàn hoặc tiếng Anh không? Xin vui lòng giữ điện thoại.

Tôi sẽ liên lạc với người thông dịch cho bạn신짜오.

반 고 노이 드억 띠엥 한 확 띠엥 아잉 콩? 신 부이 롱 기으 디엔 투와이.

또이 쎄 리엔 략 비이 응어이 통 직 조 반.



중국어

你会说韩语或者英语吗？请不要挂线，我帮你接通翻译。

니 후에이슈어 한위 후어찌 잉위마? 청 부야오 파시엔, 웨 빵니 지에통 판이

(간단히)你会说韩语或者英语吗？请稍等，转线给你。

(잠시만 기다리세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니 후에이슈어 한위 후어찌 잉위마? 청 사오 뎅, 주안시엔 게이니.



필리핀어

Naiintidhan niyo po ba ang salitang korean o english?

Manatili lang po sa linya at ikonkukta ko po kayo sa tagapagsalin ng ibang wika.

나이인턴디한 뉴 포 바 앙 살리팡 코리안 오 잉글리쉬?

마나밸리 략 포 사 린야 앙 이꼬고넥파 꼬 포 까요 사 마가빠살린 낭 이방 위까.



러시아어

Вы говорите по-корейски или по-английски?

Подождите, скоро вам поможет переводчик.

가바리체 빠 캐레이스끼 일리 빠 안글리스끼? 빠다쥐지체, 스코러 냐 모Jessica 빠레봇.

부득이하게 3자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현장에 통역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내담자에게 1577-1366이나 1644-0644를 안내하여 그곳으로 연락을 취하게 한 다음 즉시 위 연계 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의 경우 주의사항과 피해자로부터 알아두어야 할 것(p.48 이하 피해내용파악 참조)을 알려주고 사후 상황을 확인한다.

아래는 위 관련 기관을 연계할 때 쓰는 표현이다.

3자통화 연결할 때

 한국어	<p>제가 통역을 연결하여 바로 다시 전화를 드릴 테니.</p> <p>전화를 끊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p>
 영어	<p>Hold on, please. I will just connect this call to translator's line.</p> <p>홀던, 플리즈. 아 월 저스트 커넥 디스 콜 투 트랜스레이터스 라인.</p>
 베트남어	<p>:Tôi kêt nối với một thông dịch viên và tôi sẽ gọi lại cho bạn, hãy treo lên và chờ đợi.</p> <p>또이 껏 노이 베이 못 통직 비엔 바 또이 세 고이 라이 꼬 반, 하이 께오 렌 바 찌 도이.</p>
 중국어	<p>翻译现在不再。我找他之后，回给你打电话。请你先挂电话等一下。</p> <p>판이 시엔짜이 부짜이. 위 짜오타 쪽호우. 후에이 케이니 다티엔화.</p> <p>청 니 시엔 꽈 디엔화 넝이시아.</p>
 필리핀어	<p>Maghintay lang ng sandali at ikokonekta ko lang po kayo sa tagasalin ng ibang wika.</p> <p>막힌다이 랑 낭 산달리 앗 이꼬꼬네파 코 랑 포 까요 사 따가살린 낭 이방 위까.</p>
 러시아어	<p>Я перезвоню вам через минуту с переводчиком.</p> <p>положите трубку и подождите.</p> <p>야 빠레즈바뉴 밤 체레스 미누뚜 스 빠레봇취컴. 빨라취께 뜨롭프꾸 이 빠다취지께.</p>

상담원은 통역인(혹은 다른 상담소의 연계)을 통하여 내담자가 현재 안전한 상황에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의 피신이나 쉼터(p.109 이하 참조) 입소를 권한다. 내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상담소로 내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하는데,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한국지리에 낯설어한다면 내담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라고 알린 다음 즉시 데리러 간다. 이 때 통역을 구할 수 있다면 함께 간다.

3자통화가 가능하거나, 통역할 사람이 없는 경우

외국어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

센터명	지원언어	이용가능시간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644-0644 (3자 통화)	영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네덜란드,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러시아, 몽골, 태국, 캄보디아(14개국어)	(평일) 9시-18시 (주말) 13시-19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영어, 베트남, 중국, 러시아, 몽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8개국어) 수원센터 031-257-1841 대전센터 042-488-2979 광주센터 062-367-1577 부산센터 051-508-1366	365일 24시간
서울시 다산콜 120	영어,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5개국어)	365일 24시간
BBB통역서비스 1588-5644	영어, 일본, 중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독일, 포르투갈, 아랍, 폴란드, 터키, 스웨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16개국어)	365일 24시간
서울글로벌센터 1688-0120	영어,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7개국어)	(평일) 9시-18시 러시아어는 13시까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644-0644	영어, 몽골,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등(10개국어 이상)	(평일) 9시-18시 (주말) 13시-19시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2-6900-8000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31-837-8401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55-338-2727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53-654-9700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31-475-0111	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55-253-5270	

2) 피해 내용 파악 (전화 상담, 초기 면접 상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초기 상담 시 파악해야 할 내용)

전화로는 아래 사항을 우선 물어보고, 나머지 부분은 직접 만나서 시간을 가지고 차근하게 물어본다. 관련 기관에 연계할 경우에도 상대 기관이 내담자에게 이 부분을 우선 물어볼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 해둔다.

■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의 인적 사항

성명, 국적, 생년월일, 입국 날짜, 업소이름, 기획사 이름, 매니저 이름과 연락처, 결혼여부, 현재 체류자격 및 유효 기간, 현재 거주지 등

■ 사업장 이탈 여부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에는 업소를 탈출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사업장 무단 이탈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였는가에 대한 사실 여부와 더불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업장 무단 이탈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벌금 산정 기준이 달라져 벌금 액수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피해 상황

성매매 강요사실(쿼터/바파인 등), 랩댄스, 섹시댄스 등 성적서비스 강요, 폭행, 폭언, 모욕, 갑금, 갑시, 강간, 협박, 체불임금 등

■ 호소 내용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산부인과적 질환, 심리·정서적 질환, 쉼터 연계, 귀국 지원, 알선업자 처벌을 위한 고소 등

3) 욕구 파악 및 정보 제공

초기 상담에서 통역을 통하여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경청하여 내담자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통역을 거쳐야 하는 한계와 피해여성의 심리적 무기력으로 인하여 상담 진행이 더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담원은 이를 미리 예상하여 느긋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담자를 대한다.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의료 지원/자활 지원/귀국 지원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브로커나 업주를 고소하고 싶다면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형사 고소(p.59 이하 참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p.84 이하 참조)이 가능함을 알린다. 법률 지원과 관련하여 체류 자격 변경의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아픈 곳이 있다면 의료 지원(p.101 이하 참조)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면 쉼터 입소를 권유할 수 있다.

쉼터를 통하여 귀국 전까지 여성이 원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귀국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한다.



2. 긴급구조와 긴급보호

1) 긴급구조

내담자가 업소에서 나와 업주로부터 추적을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감시·감금을 피해 전화로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내담자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긴급구조 해야 한다. 긴급구조를 요청한 사람이 내담자 본인이 맞다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내담자와 통화가 불가능하다면, 문자로 주고받을 수도 있다.

- 가. 외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 나. 외출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 다. 현재 누구랑 같이 있는지
- 라. 주소와 상호명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 마. 어떤 피해상황이 있는지
- 바. 업주와 경찰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내담자의 상황이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내담자에게 경찰과 함께 구조하러 갈 예정임을 설명하고 상담소에서 나갔을 때 구조 요청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도록 내담자의 외모나 특징을 확인한다. 위험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절대 상담원 혼자 가는 것은 피하고, 117(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이나 유착관계가 없는 유기적인 경찰서(여성계나 외사과, 국세범죄수사대 등)로 연락하여 경찰과 함께 가도록 한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지역경찰과 업주와의 유착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지역의 관할서가 아닌 다른 곳에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대동하는 경찰에게 업소명과 주소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구조시 알려준다. 또 되도록 통역인을 구하여 함께 간다.

업소에서 긴급 구조를 할 때 구조를 요청한 내담자만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모두와 개별면담을 하여 털

업소를 원하는 모두를 구조해야 한다고 경찰에게 미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경찰이 단독으로(구조 요청한 여성만 데리고 나오는 등) 일을 정리하지 않도록 한다.

긴급한 구조가 아니라 계획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구조라면 경찰과 구조할 상황(여성들과의 개별면담, 상담원의 자리배치 등)에 대해 미리 상의한다. 계획을 하고 긴급구조를 나가는 상황에도 경찰과 업주와의 유착상황을 대비하여 업소명이나 주소는 경찰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구조사, 경찰과 함께 각 여성을 만나 우리가 현장에 있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피해상황/법적상태 등을 파악하여 탈업소 할 것을 권유한다. 이때, 여성이 탈업소하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상담원의 영문 명함을 전달하여 필요시 연락할 것을 권유한다.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가 구조할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로 구조할 내담자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이 가능한 상황인지 다시 파악한다. 이때, 반드시 긴급구조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긴급보호

성매매 피해자들이 긴급사항(업주의 협박 및 위협, 긴급구조 등)에 처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피난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서 긴급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보호 대상자는 상담원이 판단하여 성매매피해자와 상담 후 상담소 내 긴급보호실 및 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호 시, 긴급구조 된 피해자 및 피해자들만 긴급보호실에 있게 될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고 또한 낯선 기관에 와서 숙식하는 심리적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한 상담원 및 담당상담원이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는 것을 권장한다. 내담자가 외출 또는 기타 긴급보호실 이탈하는 경우 담당 상담원에게 위치를 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한다. 24시간이 지

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동의로 관련기관(보호시설 등)에 연계하거나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으로 피해자의 지속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긴급구조/긴급보호시

위 초기 상담과 같은 내용을 여성으로부터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여성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들에 관하여도 충분히 설명한다.

3. 법적 지원

1) 체류 지원

■ 체류자격

성산업으로 유입된 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은 E-6(예술통행)이다. 예술통행 사증의 경우 1회 통상 6개월간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E-6 비자를 소지한 이주 여성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연장을 신청해야한다. 만약 체류기간이 도과하도록 체류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체류기간이 초과되어 소위 ‘불법’ 체류자가 되어 단속되거나 강제퇴거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 여성이 일하던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어 뛰쳐나올 경우, 예컨대 성매매를 강요받아 이를 피하기 위해 업소를 탈출하는 때에는 사업주나 기획사 쪽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업장 이탈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사업장이 탈신고가 접수되면 이주여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될 수 있다.

한편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중 체류자격이 E-6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거주비자(F-2)를 발급받은 후 성산업으로 유입된 경우, 단기 관광비자(C3)로 입국하여 성산업으로 유입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때에도 체류자격에 허용된 이외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되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 우려가 있는 이주여성이 쉼터나 상담소를 찾아왔을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인신매매피해사실과 여성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체류자격을 일정기간 보호하도록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에 의해 사업주나 기획사 측이 무단이탈 신고만으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이주여성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항상 유효한 체류자격과 기간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한다. 만약 초과체류 상태이거나,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어 단속되어 강제퇴거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은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설사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주여성이 인신매매 피해를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체류상태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를 떠나서 당장의 강제퇴거를 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 강제퇴거의 위험에 방어

인신매매 피해여성은 설사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법률로써 강제퇴거 또는 보호소 수용을 면할 수 있다.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은 바로 성매매처벌법 제11조이다. 본 조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게는 외국인 여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원은 이 조문을 활용하여 외국인 여성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제로서 외국인 여성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거나, 피해자로 수사받아야만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단계별로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매매처벌법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은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 수사단계

외국인여성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신고한 경우,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보호의 집행이 금지된다. 금지기간은 검사가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제기를 하는 시점까지이다. 이를 위하여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11조 제1항).

ii. 형사재판단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검사는 공소 제기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유예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실무상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요청권한의 행사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고 하니,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원 측에서는 위 규정을 들어 검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유예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iii. 지원시설 이용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여성은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여성이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구금되었거나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

인신매매·성매매 피해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여 여성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경우에는 인신매매·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고소장,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일시보호해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호해제를 조건으로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그 액수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른다. 보증금은 이후 절차에 따라 출국할 때 반환받을 수 있다. 도주를 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강제퇴거명령 자체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과 같이 행정소송으로 다툴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이 출입국행정행위에 대하여 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담원은 인신매매·성매매피해 외국인 여성을 상담하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나 출입국관리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강제퇴거명령결정이 사전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기타비자(G-1)의 활용

기타비자(G-1)는 치료, 임금 체불 등에 관한 소송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 형태이다. 기타비자(G-1)를 소지하면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3개월 단위로 체류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사유가 해소되면 더 이상 기타비자로 체류연장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성매매피해 외국인 여성은 성매매처벌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강제퇴거절차의 유예를 요청한 후 기타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비자의 발급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담원이 동행하여 외국인 여성이 기타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타비자(G-1)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① 산업 재해 대상자의 보호자 :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산재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등, 산재 진단서, 가족관계 기타 보호자 입증서류
- ②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중인 자 및 보호자 : 진단서,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
- ③ 성매매 관련 형사사건·민사사건 진행 중, 혹은 산업재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체불임금지급 등 각종 민사소송 진행 중인 자 : 고소장 접수증, 소장 사본, 소장 접수 증명원, 법률구조 결정서 등
- ④ 체불임금 관련 노동사무소에서 중재중인자 : 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노동부 발급 체불임금 확인원 등
- ⑤ 출산 등 기타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 한 자(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참고 : 기타비자(G-1)의 한계

기타비자(G-1) 소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출입국에서도 만약 해당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 자격(F-2-1)의 경우 “G-1 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남은 체류 기간 동안 F-2-1비자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기타비자(G-1)의 비실현성으로 인해 외국인 여성들은 성매강요,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하기 어렵다.

* 참고 : 수사 또는 재판이 완료된 후 인신매매·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의 체류자격

인신매매·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은 수사 또는 재판기간 동안 기타비자(G-1)를 소지하여 임시적으로 체류연장이 가능하나, 수사기간과 재판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체류자격을 요청할 수 없다. 설사 인신매매피해 사실이 인정되어 기하지가 유조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수사·재판기간 동안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성매매처벌법 제11조 이외에 법적 보호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극심한 인신매매피해 사실이 입증된 피해자에게 T 비자를 부여하여 3년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3년의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는 영주비자 신청도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체류자격 부여, 사회보장혜택 보장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들에게 인신매매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현실이다. 여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본국으로의 출국이기 때문이다. 시급한 입법이 필요한 지점이다.

■ 출입국관리법상 과태료에 대한 대응

인신매매·성매매피해 외국인 여성이 기타 비자(G-1) 발급을 신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여성의 한국에서 체류한 동안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체류기간 초과, 사업장 이탈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이 때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의 정도는 위반 내용에 따라 몇십만원에서 천여만원까지 폭이 달라진다. 이 경우 여성의 인권 피해 침해상황, 경제적으로 열악한 정도 등을 단원하여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 재량에 의해 반액까지 감경할 수 있다. 상담원은 외국인 여성의 과도한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탄원할 필요가 있다.

- ① 탄원서(출입국 제출용) (p.157 이하 검찰제출용 p.162 이하 참조) : 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중 2차 성매매 강요 부분 여부, 감금 여부, 여권 압류 여부, 임금 체불 여부, 계약서 위반 여부 등 인권 침해 사실을 자

세히 기술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이탈이 정당한 행동으로 ‘사업장 무단 이탈 신고’는 무효임을 주장한다.

- ② 피해자의 진술서와 진술서 번역본 : 진술서에는 본인이 클럽에서 당한 피해 사실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며 꼭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의 계약서와 계약서 번역서
- ④ 피해자의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 진술서와 진술서 번역본, 계약서 외의 증거 자료 (대사관의 조사 증빙 자료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사관과 연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당 대사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사관들 중 특히 필리핀 대사관은 다른 나라 대사관 보다도 자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대사관이다. 필리핀 사람들의 문제를 상담 받았는데, 필리핀 대사관에서 도움받을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과 연계하는 것이 피해자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각국 대사관 연락 리스트

국가	전화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중국 대사관	02-738-1038	서울 종로구 효자동	http://www.chinaemb.or.kr/kor
필리핀 대사관	02-796-7387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http://www.philembassy-seoul.com
러시아대사관	02-318-2116	서울 중구 정동	http://www.russian-embassy.org
베트남대사관	02-739-2065	서울 종로구 삼청동	-
태국 대사관	02-790-2955	서울 용산구 한남동	http://www.thaimbassy.or.kr
몽골 대사관	02-798-3464	서울 용산구 한남동	http://www.mongolembassy.com

2) 형사 사건

(1) 고소

누구를, 어떤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 범행 주체별 정리

한국 기획사

- 기획사 대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 목적 약취·유인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목적 인신매매죄

- 실제 여성을 이동시킨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 목적 약취·유인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목적 인신매매죄(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으나, 고소할 때는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기획사 대표와 함께 고소할 수 있다.)

- 기획사 대표나 직원이 인신매매 후 실제 발생한 성매매강요 또는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성매매강요 또는 성매매알선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업소

- 업소 대표(업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 목적 약취·유인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목적 인신매매죄의 공범(이 경우 공범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업소와 기획사와의 연계 구조의 간밀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강요죄, 성매매알선죄

- 업소 매니저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강요, 알선죄의 공범. (인신매매 과정에 실제 가담하지 않고, 업소로 온 여성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 목적 약취·유인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목적 인신매매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①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자신의 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형사상 고소라고 하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협행법상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규정은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 규정이 있다(p.61 이하 형사처벌규정 참조). 고소할 때에는 이러한 처벌 규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고소할 필요는 없고,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조항, 죄명을 모두 기재하여 고소한다. 여러 피의자들의 여러 범죄 사실을 하나의 고소장에 함께 적을 수 있다.
- ③ 인신매매와 관련된 위 두 처벌 법구 외에도 인신매매 과정이나 업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일어난 범죄행위 – 성매매 강요/알선, 성폭력, 감금, 폭행, 상해, 재산(임금, 수입 등)의 갈취, 횡령 등 – 이 있으면 고소장에 함께 기재한다.
- ④ 고소장 작성 요령
- 고소인(피해자), 피의자(가해자), 범죄 사실, 해당 죄명을 기재한다.
 - 피해자의 피해 사실, 즉 범죄 사실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재한다. 범죄 일시와 장소도 특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된 사건이 협행법상 어떠한 처벌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피의자들의 행위가 그 처벌 조항에 해당함이 인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서술을 하는 것이 좋다.
 - 현재 가지고 있는 범죄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고소장 마지막의 ‘첨부서류’란에 적고 함께 제출한다.

(2) 형사처벌 규정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영리 등 목적의 약취 · 유인죄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 ①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 ①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약취 · 유인죄의 가중처벌)

-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 또는 유인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기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 ⑥ 생략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누하거나 도포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i. 기본 범죄와 가중처벌 범죄

인신매매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처벌 규정은 형법이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의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

인신매매와 관련된 형법상 기본 범죄는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죄(형법 제288조)라고 볼 수 있다. 이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므로, 고소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4항「위반 혐의로 고소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법 제287조가 적용되고, 가중치별 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치별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치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고소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인신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사하고 기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와 관련된 기본 규정은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치별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고, 실제 이들 법조항에 의하여 인신매매 행위가 처벌된 사례가 있으므로,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치별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고소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구성요건

영리 목적의 약취 또는 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영리 목적, ②약취 또는 유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영리 목적’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을 뜻한다. 기획사 및 업소의 영업은 모두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리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받는 상태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여성을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켜 일정 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경우 ‘약취’에 해당한다. 형사사건에서 ‘약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으로 사람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의 인신매매 과정을 보면 형사사건화 되었을 때 약취보다는 유인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여성은 ‘한국에서 가수로 취업시켜주겠다’는 미끼로 모집한 뒤 현지 기획사 및 한국 기획사를 통해 여성은 한국으로 입국시켜 유흥업소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게 한 경우, 영리 목적 유인행위(‘영리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

iii. 참고 판결

*“특정범죄기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4항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기중처벌하고 있는 취자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인’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감언 이설을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기망에 준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유혹이 있고 상대방이 그러한 유혹에 현혹되어 명백히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야 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영리유인죄에 있어서 유인이라 함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혹은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바, 피해자가 형식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따라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범인의 기망에 속아간 것이고, 여관에 들어간 뒤에도 성매매여성으로 취업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도망의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범인들의 사설적 지배하에 옮겨졌다고 보아야 한다. (대구고등법원 1987. 3. 18. 선고 87노55 판결 : 확정)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미성

년지이기는 하나 이미 수년 동안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다방 영업의 생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그대로 믿지는 않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02. 4. 12. 선고 2001노3042 판결 : 확정)

iv. 증거

범죄의 증거를 수집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게 있지만, 인신매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단계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인신매매 사례에서 영리 목적 약취·유인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예시이다.

[진술 증거 : 피해자, 개입된 기획사 대표, 업소의 대표, 직원, 같은 경로로 유입된 동료 등의 진술]

- 피해자가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와 경위(가수활동을 할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 등)
- 피해자가 모집 단계부터 한국 업소에 도착하여 일하게 되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의 상세한 진술
- 현지 기획사, 한국 기획사가 피해자를 모집하면서 했던 말, 제안, 약속, 근로 내용, 근로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
- 피해자가 업소에 오기까지 제공받았던 정보(본인이 실제로 하게 될 일의 성격, 일할 장소, 실제 근무조건에 대한 정보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 피해자에게 유인 행위를 한 사람들을 최대한 특정할 것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들]

- 피해자가 서명하였거나 제공받은 근로 계약서
- 피해자가 참여한 오디션 관련 정보

- 피해자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 서류
- 피해자의 비자 관련 서류

「성매매일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강요, 성매매일선

「성매매일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친족·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을 등을 촬영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

로 낙타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제9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i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제18조 제3항 제3호)

이 범죄로 치별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피해자의 국내 유입과정이 ‘인신매매’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는 그러한 인신매매의 목적이 ‘성매매’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법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범죄는 ‘목적범’에 해당하므로 ‘성매매 목적’이 현실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매매 목적’이 있으면 성립한다. 즉, 성매매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인신매매를 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성매매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외국에서 국내로 데려온 행위 자체로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성매매 목적’이라는 부분의 입증을 위하여, 피해자가 유입된 업소에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매매가 그 업소의 일반적인 영업 형태인지, 업소의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등에 관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게 될 수 있다.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피해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 목적이 실현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와 성매매강요죄(또는 성매매알선죄)의 2개의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와는 별도로(추가하여) 성매매 강요 또는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다.

[주요 구성요건]

- **성을 파는 행위** :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하는 행위(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위계** :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 피해자에게 한국에 가서 하게 될 일이 ‘성산업 종사’라는 것을 숨기고 가수로 공연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속여 한국으로 입국시켰다면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위력** : 형법에서의 ‘폭행’, ‘협박’ 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강제력 개념. 우리 판례는 ‘위력’에 관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증거]

다음은 인신매매 사례에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예시이다.

■ 인신매매 관련 증거

[진술 증거 : 피해자, 개입된 기획사 대표, 업소의 대표, 직원, 같은 경로로 유입된 동료 등의 진술]

- 피해자가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와 경위(가수활동을 할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 등)
- 피해자가 모집 단계부터 한국 업소에 도착하여 일하게 되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의 상세한 진술
- 현지 기획사, 한국 기획사가 피해자를 모집하면서 했던 말, 제안, 약속, 근로 내용, 근로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
- 피해자가 업소에 오기까지 제공받았던 정보(본인이 실제로 하게 될 일의 성격, 일할 장소, 실제 근무조건에 대한 정보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 피해자에게 유인 행위를 한 사람들을 최대한 특정할 것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들]

- 피해자가 서명하였거나 제공받은 근로 계약서
- 피해자가 참여한 오디션 관련 정보
- 피해자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 서류
- 피해자의 비자 관련 서류

■ ‘성매매 목적’ 관련 증거

-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업소의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증거]
- 피해자, 동료종업원, 성구매남성의 진술,
 - 바파인(BAR FINE)제, 성매매 장부, 일기, 메모 등

_____ ii. 성매매 강요(제18조 제1, 2, 3항)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거나,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

정에 빠뜨려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별도로 치별된다. 이 조항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 하였다는 정황, 즉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증거]

-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 함께 일한 동료들의 진술
- 업소의 성격(외국인전용유흥업소 등), 위치(기지촌, 섬, 외부 접근 어려운 곳), 영업 형태(성매매의 상시적 운영), 시설 구조(피해자 혼자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
-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감시 체제(여권 압수, 숙소 구조, 매니저 등 감시자, 외출 제한, 임금 미지불, 수수료 선착취로 인한 무자력 상태 등)
- 성매매가 강요되는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BAR FINE, 주스 쿼터제, 별금제도 등)
- 성구매 남성의 진술(업소의 성매매 영업 형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

iii. 성매매 알선(제19조 제2항 제1호)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성매매가 ‘강요’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성매매가 실제 한번이라도 이루어진 경우, 업주를 최소한 ‘성매매 알선’죄로 치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기를 받아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용을 알선하는 때에는 그로하지 아니하다.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 허기를 받아야 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7조 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5의 2.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일선·권유한 자
- 6의 2.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일선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등에 위반한 자
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_____ i .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제18조 제1항).

_____ ii .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18조 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 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2010. 5. 4. 기준)

E-6 비자(연예홍행비자)⁵⁾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포함된다. 그 취업활동 범위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이다. 자신의 체류자격의 범위 외의 취업활동을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제94조 제5호, 제20조), E-6 비자 소지자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체류자격 외의 활동이 강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예술홍행 체류자격(E-6 비자)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은 외국인전용유 흥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게 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94조 제5의2호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 (실제 처벌 사례 있음).



5) E-6의 이중적 기준과 차별적 사증 절차에 대한 내용 : 과거 2006, 7년 이전에만 해도 E-6 소지자는 일금체 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 절차조차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는 E-6비자가 '노동자'가 아닌 '연예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고, 노동부의 이 같은 분류 기준은, 2007.8년도 이후부터 개선되어, 현재는 이들이 다른 노동자들처럼 일금체불 등의 문제를 노동부에서 지원 받게 되었다. 하지만, 출입국에서는 여전히 E-6비자를 노동 비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출입국은 E-6 사증 신청 절차 안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음성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사증 절차 안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제출 서류이며, 각 업소로 파견된 후에도, 이들 E-6비자 소지자들은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매달 성병 및 HIV 항체음성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유흥접객원으로서 취급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및 보호

인신매매 범죄 유형 중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법상·실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절차적 보호 규정

i. 수사,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 인신매매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피해자 본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표시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⑥)}

6)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①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분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조사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분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표시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또는 수사에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나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으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ii. 재판절차에서의 심리 비공개

인신매매 피해자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심리하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사생활 보호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심리비공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허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비공개결정을 할 수도 있다.⁷⁾

■ 성매매피해자의 불처벌 특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여 「성매매일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수사기관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수사기관은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⁸⁾

7) 「성매매일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심리의 비공개)

- ①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④ 제1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작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8) 「성매매일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 ① 성매매피해자와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자찌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고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채권의 무효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범한 사람이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이므로 계약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무효이다.⁹⁾

(4) 조사 동행

체류지의 문제, 낯선 언어, 수사기관의 딱딱한 분위기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것은 내담자에게 굉장한 스트레스이다.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로 인하여 내담자가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원은 내담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조사 과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상담원이 함께 할 것을 알리고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힘을 내준 내담자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 조사 동행 전 상담원이 준비해야 할 사항

먼저 상담원은 조사 전 미리 고소장(¶. 140 이하 고소장 예시 참조) 및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야 당황하는 일이 없다. 예상되는 질문에 관하여 내담자와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이주여성의 경우 우리말을 구사하기 불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진술서를

9) 「성매매일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 ① 성매매일선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 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강요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찬착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지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 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비탕으로 고소장이 만들어질 수 있고 사건의 수사 방향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진술서에는 적어도 이 책에 예시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의 것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단 여성의 자국언어로 작성한 다음 우리 말로 번역한 번역본을 함께 준비한다. 이렇게 작성한 진술서는 고소장과 함께 혹은 조사 전 미리 조사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 내담자의 경우 다른 부분의 지원에서도 그렇듯이 사건 조사에 있어서도 적절한 통역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사전에 경험이 있고 믿을만한 통역인을 구할 수 있다면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 통역인을 구했다면 사전에 이를 미리 수사기관에 알리고 통역비 지급 여부, 통역인이 가져가야 할 자료(신분증 등) 등을 알아둔다.

또한 조사를 마친 다음 여성이 머무를 쉼터(p.110 이하 국내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시설(쉼터) 참조)를 미리 알아보아 수사기관이 신변확보를 문제삼아 임의적으로 여성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 조사 동행 전 내담자에게 숙지시킬 사항

경찰·검찰 조사 시 내담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일관된 내용으로 말할 수 있게 내담자가 진술서를 사전에 반복하여 읽도록 권유한다. 또한 상담원은 조사 전 내담자에게 조사 당일 너무 화려하거나 노출이 많은 옷과 진한 화장은 피할 것을 미리 안내하여 내담자의 인상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조사관이 내담자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 성매매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거나 거칠게 말을 하는 경우, 내담자의 답을 유도하는 경우, 내담자의 진술을 잘 들어보지 않고 중간에 끊는 등의 경우에는 내담자가 불쾌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조사 진행과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행동으로 이런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을 숙지시킨다. 상담원은 조사관이 차별적인 언행을 보이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메모해둔 다음 후일 이를 이유로 조사관변경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조사 동석 문제 관련

[동석의 필요성]

이주여성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섭외할 수 있다면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담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상담원이 동석할 수도 있지만 거부될 수도 있음을 내담자에게 미리 설명한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특성상 우리나라 여성은 지원할 때보다 조사 동석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통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사동석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여성의 인신매매/성매매 피해자임을 피력하여 동석할 것을 알린다. 상담원 동석 요청은 사전에 담당 경찰에게 구두로 하여도 되나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담소의 공문 등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도 좋다. 아니면 피해여성이 직접 수사관에게 동석 요청을 견의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혹시 상담원 동석을 요청할 때 조사관이 내담자에게 상담원이 반드시 필요한지 질문할 때,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내담자가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동석이 이루지지 않게 되므로 내담자에게 미리 알려준다.

[동석이 거부되는 경우]

상담원의 동석을 조사관에게 요청하였는데 조사관이 거부한다면 성매매처벌법 제8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한 설명, 성매매처벌법 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조항을 들어 내담자가 성매매피해자인가를 설명하며 다시 상담원의 동석을 요청한다. 단, 조사관과 상담원이 이를 이유로 싸우게 된다면 오히려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대처한다.

상담원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라도 상담원은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동행하고 다만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 상담원은 여성에게 상담원이 조사를 받는 사무실 바깥 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면 수사관에게 잠시 쉴 것을 요청하여 바깥으로 나와 상담원과 상의할 시간을 벌 것을 미리 주지 시킨다. 내담자가 혼자 조사 받는 것에 대해 너무 불안해한다면 117로 연락하여 이 조사가 성매매피해사건임을 다시 한번 주지 시키든지 아니면 조사 거부를 한다든지 등의 대처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내담자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조사 중 불리한 진술에 미리 대비하기]

상담원이 동석을 하든, 하지 못하든 내담자가 상담원에게 할 말이 있거나 조사받는 것이 너무 힘들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잠깐 쉬자고 조사관에게 말할 것을 미리 알려준다. 많은 경우 여성들은 자신이 스스로 성매매를 선택했다고 진술하기 쉽다. 그러므로 상담원은 조사 전 혹은 조사 도중 휴식 시간을 빌어 여성이 업주의 불법행위(바파인의 구조, 선불금, 감시, 여권 압수, 불법 체류 상태 이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차근하게

설명해야 한다. 조사의 흐름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상담원이 적당히 휴식을 제안하고 다시 여성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동석한 경우]

상담원은 조사에 방해되지 않게 내담자가 조사관의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조사관이 어떤 의도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 느껴지거나 내담자가 진술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중간에 조심스럽게 개입하여 사실이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다. 특히 통역 과정에서 내담자의 피해 진술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담원은 이를 예의주시하여 내담자의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담원이 동석하게 되면 조사관이 조서에 상담원 동석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조사관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에 따라 상담원은 당황하지 말고 이에 응하면 되는데 요청하는 내용은 신분증 사본 제출 및 동석자의 서명 정도이다.

■ 조서확인 절차

신문조사를 마친 후, 조서를 읽어본 다음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지장을 찍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내담자, 통역인과 함께 조서를 꼼꼼히 읽어본 다음 틀린 내용이 발견되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조사관에게 요청하여 수정 또는 첨가할 수 있도록 한다. 대체로 이 과정에서 내담자나 통역인의 진술이 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 과정은 중요하다.

내용이 다 기재된 것을 확인한 것 이외에도 조사를 마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밖에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를 묻는 절차가 있다. 보통 이 절차는 형식적으로 지나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있다고 대답한다음 조서 확인 절차에서 내담자가 직접 통역을 거쳐 기재하겠다고 이야기 하면 된다. 내용 확인을 마치면 수사관이 하고 싶은 말을 쓰도록 할 것인데 이 때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 수사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등 수사관이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하고 싶은 말에 관하여 쓴다. 일단 여성이 자국어로 기재한 다음 그 아래 통역인이 이를 번역하여 기재하면 된다.

만약 조사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지장을 찍지 않고 이를 끝까지 문제 삼아 내 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를 마치면 긴장과 걱정 속에서 조사를 받은 내담자에게 수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 대질조사

조사 동행 전 대질조사가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면, 변호인이 함께 동행하여 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대질조사일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나오는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안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수사기관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한다. 구두로 할 수도 있으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과 별도로 상담원도 신변 안전을 위해 미리 상담원 측의 차량 등을 가지고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대질조사의 상대방이 내담자를 괴롭히고 폭력적인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 되면 조사관에게 내담자와 상담원을 상대방보다 먼저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대질조사의 상대방이 바깥에 다른 사람들을 대기시킨 것으로 느껴진다면 조사관에게 요청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5) 재판 동행

재판 동행에 있어서도 “(4)조사동행”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담자를 격려하고 심리적·정서적으로 지지한다.

■ 여성 고소인인 경우

이주여성 성매매 피해여성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여성이 업주, 에이전시 등을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여성이 아니라 업주, 에이전시 및 검사이다. 따라서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처분 결과(기소, 불기소 결정)가 내려진 이후 구체적인 형사재판 과정은 상담원이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는 이상 여성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담원은 검찰 및 법원 사건 번호를 알아두어 사건 진행 과정을 계속하여 모니터링 하면서, 검찰이나 법원에 상담소의 이름으로 탄원서 등을 제출하거나 혹시 변호사를 통해 고소 대리를 한 경우 고소 대리인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여성의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만일 수사기관이 여성을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한 경우에는 일단 수사기관에 여성의 ‘위계, 위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매매피해자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의자로 입건되어서는 안 됨을 항의하고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한다. 동시에 관련 성매매 상담소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한다. 이 경우 재판 동행시, 재판 동행 자체 이외에 상담원이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다.

내담자는 대체로 중인의 지위에서 재판에 출석할 것인데 어떠한 경우라도 재판에 출석할 경우 내담자 보호 차원에서 상담원이 반드시 동행한다. 내담자가 재판의 상대방으로부터 행해지는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담자나 내담자의 지인이 중인으로 나올 경우, 성매매 사건인 것을 감안하여 재판부에 미리 비공개 재판신청을 하여 내담자와 중인을 보호한다. 이는 담당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행한다. 또한 변호인이 내담자의 변론을 하지만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변호인과 상의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상담원의 몫이다. 사건 진행과 내용에 따라 변호인의 시작과 활동가의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재판 동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3) 민사 사건

(1) 손해배상청구

인신매매는 불법행위이므로 피해자는 인신매매 행위자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고소로 개시되는 형사절차(수사와 형사재판)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소의 제기 → 법원의 심리 → 판결

선고 → 판결 확정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2) 손해배상청구의 특별한 절차 : 배상신청과 배상명령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④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공판절차(제1심, 제2심)에서 일정한 범죄(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과 추행,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한다.¹⁰⁾

10)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제26항, 제323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의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한정적 자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고, 피해자(또는 상속인)의 배상신청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¹¹⁾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배상명령이 가능하다고 열거한 범죄 중에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사건에서 법원의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이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의무사항),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이 배상신청을 한 때에는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의 집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제4항, 제5항). 배상명령 가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일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열거규정에 누락된 것을 입법의 미비로 보고,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11)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배상신청)

-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상신청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노동관계

(1) 근로자로서의 지위 개괄 : 근로기준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외국인여성이 임금을 목적으로 공연업소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¹²⁾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 또한 받게 되므로, 외국인여성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우리 판례는 미등록상태에 놓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상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¹³⁾, 외국인 여성이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로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노동부에 임금청구와 관련된 진정을 할 경우 노동부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지하는 위험을 여성이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 진정절차를 밟는 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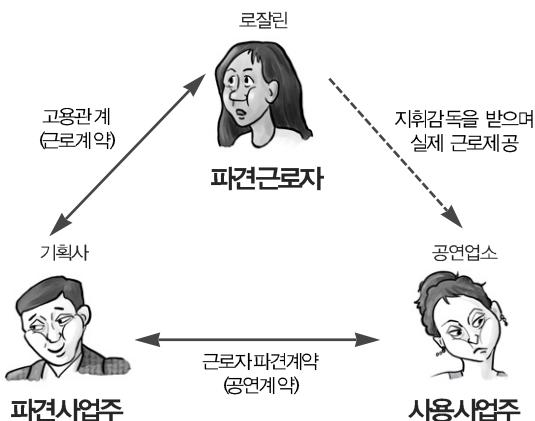
1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3)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 권리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근로자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얻고 공연업소와 근로자파견계약을 한 기획사에게만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신청 자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공연추천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여성 및 그를 고용한 기획사, 공연업소의 삼자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 파견법상의 삼각구도를 이루게 된다. 파견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특수한 형태의 근로관계인 파견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파견근로관계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삼각구도의 근로관계로, 이에 따라 외국인 여성, 기획사, 공연업소 삼자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획사는 파견법상의 파견사업주, 공연업소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하고, 이 둘 사이에 체결되는 공연계약이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며, 외국인 여성은 위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되는 파견근로자이다. 즉, 외국인 여성은 파견사업주인 기획사와 고용관계에 놓여있지만, 근로자파견계약인 공연계약에 따라 공연업소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그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게 된다. 이 경우 외국인 여성은 근로계약에 따라 기획사로부터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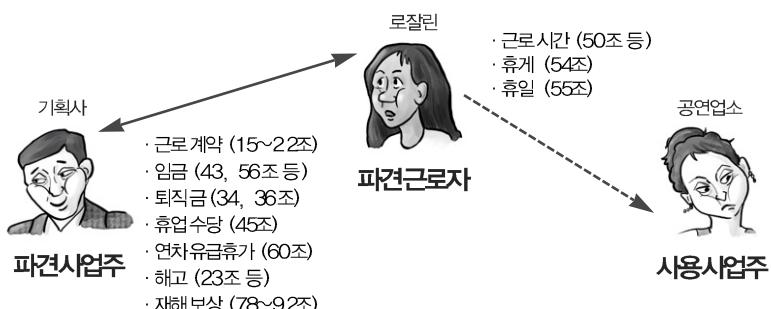
금을 받고, 기획사는 파견계약에 따라 공연업소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

(2)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상의 권리

■ 개괄

파견법은 전통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3자 이상이 등장하여 다면관계를 이루는 파견근로관계의 특수성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있는데, 그 수정내용의 핵심은 2인의 사업주 중 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할 것인지, 바꾸어 말해 근로자가 어느 쪽 사업주에게 자신의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파견법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양자 모두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면서도, 파견법 제34조를 두어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마다 각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어느 한 쪽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 위반시 근로기준법상 별적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로잘린이 어느 사업주에게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도해와 같다.



■ 임금에 관한 권리¹⁴⁾

i.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기획사)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여성은 기획사에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¹⁵⁾

ii. 임금지급방법 및 액수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액을, 통화로서, 근로자에게 직접, 정기적으로(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또한 기획사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어야 할 돈(예컨대, 근로자가 사용한 국제전화요금, 도난이나 물품 파손 등의 손해액)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일정액을 제하고 나머지 액수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14) 임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 및 나머지 각 권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주노동자지원 활동기』를 위한 법률마뉴얼』76~103쪽 참조.

15) 단, 예외적으로 ①사용사업주인 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거나 ②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소도 당해 기획사와 연대하여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파견법 제34조 제2항).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자 모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여성은 업소와 기획사 어느 쪽이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임금 전액 지급 후 근로자에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임금채권과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여 임금전액지급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 퇴직금

외국인여성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기획사를 상대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¹⁶⁾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기밀연장합의가 없는 한, 기획사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채권의 시효

임금, 퇴직금 등의 채권은 3년의 기간 경과로 시효소멸하며, 위 3년의 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때(일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임금채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구, 가압류, 가치분, 승인 등을 통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¹⁷⁾

(3) 임금 체불에 대한 구제 수단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크게 ① 사용자(기획사)와의 협상, ② 노동부 진정, ③ 사용자(기획사)에 대한 고소·고발, ④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라는 네 가지 해결방안이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중 임금체불사안을 중심으로 이러한 구제수단을 살펴본다.

16)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17) 소멸시효 중단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아주노동자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매뉴얼』, 90~91쪽 참조.

■ 기획사와의 협상

다른 구제수단에 앞서 기획사에 임금지급을 독촉하거나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다. 또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는 도중에 기획사 쪽에서 합의를 요구해오는 경우도 있다.

기획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기획사가 합의에 따르지 않을 때 후속절차(노동부진정 또는 형사/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불각서는 차용증, 확인서, 현금 보관증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을 주어야 할 사실”만 내용상 확인되면 된다. 나아가 이러한 지불각서에 공증까지 받아두게 되면 증거로서의 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¹⁸⁾

그러나 인신매매과정의 하나로서 임금체불문제가 나타나는 우리 사례의 특수성 때문에 기획사와의 협상 시도는 사실상 의미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임금독촉을 위해 기획사와 접촉하는 경우에 기획사는 그 대가로 외국인 여성에게 체류를 포기하고 즉시 귀국할 것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외국인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긴급히 귀국 수속을 진행시켜 외국인여성이 다른 민사상·형사상 구제수단을 모두 포기한 채 귀국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노동부에서는 노동부진정에 앞서 기획사와 직접 협상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기도 하나,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이유로 기획사와 협상 없이 노동부 진정절차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 노동부 진정

노동부 진정이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한 후 사용자에게 시

18) 사용자에 대한 독촉, 지불각서 작성 및 공증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주노동자지원활동기』를 위한 법률마뉴얼, 92~93쪽 참조.

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꾀하는 행정상 구제절차이다.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노동부 진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절차 없이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고발을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부 진정절차가 소송에 비해 훨씬 간이하고, 이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부가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차후의 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소송에 앞서 노동부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통한 해결을 꾀하는 편이 좋다.

i . 진정서 접수방법

-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를 통해 인터넷 민원 접수
- 기획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노동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에 진정서를 직접 제출 : 지방노동청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으며, ①진정인(외국인여성)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②피진정인(기획사)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③진정 내용 : 임금 ○개월 체불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된다.

ii . 근로감독관의 조사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외국인여성)와 사용자(기획사)에게 우편으로 노동부 출두 명령을 내린 후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iii. 근로감독관의 처리

사실조사 후 근로감독관은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하거나 기획사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화해가 성립하거나 기획사가

시정명령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진정사건은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기획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기획사를 검찰에 형사고발할 수 있을 뿐, 기획사에게 임금 지급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므로 기획사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노동부를 통해 해결할 여지가 없으며, 기획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밖에 없다.

※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서는 차후 민사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입류 협조공문〉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위 서류들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되므로 반드시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아 놓도록 한다.

〈체불임금확인원〉은 노동부명의로 체불임금이 존자함을 확인하여주는 서류로서, 이후의 소송 절차에서 ①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시 구조대상자소명자료로, ②가입류를 신청하는 경우 가입류신청금액 입증 자료로, ③민사소송제기시 임금채권 내역 및 액수의 입증 자료로, ④사용자 재산권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액 소명 자료 등으로 사용되므로, 소송용, 가입류용, 기타용으로 3부 이상을 발급받아 놓는다.

〈무공탁가입류 협조공문〉은 근로자가 공탁금없이 가입류할 수 있도록 법원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공문으로, 가입류 신청시에 사용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하여주고 있다.

iv. 재진정제도

근로감독관이 기획사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방노동청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 처리하게 된다.

■ 고소 · 고발¹⁹⁾

외국인여성 또는 상담단체는 기획사를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 검찰 또는 노동부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기획사의 임금체불행위와 관련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체불한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외국인여성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기획사의 처벌이 불가능해지고, 같은 사안을 이유로 하여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사표시한 경우만 해당하는 문제로, 기획사나 다른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 **최저임금법 제28조** :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기획사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기획사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본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고소 · 고발은 다음과 같은 점에 그 실효성이 있다.

- 수사 및 형사소송과정을 통해 기획사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기획사가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협약이 취소된다.(p.97 이하 행정재판부 참조).

19) 형사절차의 일반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p.61 이하 참조

- 그러나 유죄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외국인여성이 보상을 받게 되거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²⁰⁾

외국인여성이 기획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즉, 외국인여성이 원고, 기획사가 피고가 된다. 기획사 대표와 같은 개인이 아니라 기획사 법인(회사)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임을 유의한다. 임금청구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명세서 또는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사본, 노동부에 진정한 경우 그 진정서 사본 또는 체불임금확인원,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의 티인 진술서 등이 있을 수 있다.

민사소송은 크게 소의 제기 → 심리 → 판결선고 → 판결확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 확정 후²¹⁾ 외국인여성이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간 다음 기획사의 재산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함으로써 비로소 승소판결문에 명시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고인 기획사 명의의 재산에 한정된다. 기획사의 대표나 사원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강제집행단계에서 집행할 기획사의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임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 따라서 미리 기획사의 재산을 파악한 후, 기획사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²²⁾

20) 민사소송의 절차 및 서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를 참고할 것

21)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가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22) 그 외 가압류의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는 공익변호시그룹 공감, 「주 노동자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매뉴얼」

97~98쪽;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참조.

5) 행정제재처분(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공연법 등)

식품위생법과 과천법은 업소와 기획사가 일정한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영업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제재처분은 행정청이 내리는 행정처분의 하나로, 국가의 형별권 행사인 형사처벌과는 구분된다.²³⁾ 이하에서는 우리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행정제재처분의 내용을 살펴본다.

(1) 업소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또는 업소 소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식품 위생과에 신고한다. 특히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 식약청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cfscr.kfda.go.kr>)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신고센터
- 부정·불량유해식품신고 전용회선(일반전화로 국번없이 1399)
- 신고할 때에는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 전에 이러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왜 행정제재처분인가? – 행정제재처분 활용의 취지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가 있으면 누구든지 이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는 제재처분권한을 직권으로 발동하도록 행정청에 촉구하는 의미만을 갖는다. 그러나 행정제재처분은 영업상 이익 박탈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업소와 기획사에 실질적인 불이익과 강한 심리적 부담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측에서는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나 기획사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23) 따라서 하나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동시에 행정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처분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8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업소가 성매매처벌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²⁴⁾과 별도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조, [별표23] Ⅱ. 3항 14호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처분의 기준이 아래에서 볼 「업소 내 풍기문란행위」의 경우보다 약하므로 오히려 아래의 사유를 이유로 신고하는 것이 제재의 강도나 증거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사유로 제재할 것인지 최종결정할 권한은 행정청에 있다.)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 항 13호 : 같은 법 제44조 제1 항 (영업자 등 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은 법 제44조 제1항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을 두고, 시행규칙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규정내용 중 우리의 사례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6호 다목 :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 안 바파인, 랩댄스 등²⁵⁾
- 6호 타목 5)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 밖 바파인 등
- 6호 거목 : 업소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²⁶⁾ ▷ 랩댄스 등

24) 법률지원서 형사처벌 피트 중 성매매처벌법 참조

25) 일반유통주점업소의 경우 업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시간), 유통점 객원이 나체로 또는 속옷만 입고 접객 행위를 한 경우 등이 이 조항 우반으로 행정제재를 당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26) 이 조항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관계기관에서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식약청,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위와 같이 규정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²⁷⁾과 별도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에 규정된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1, 2, 3차의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업소의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반횟수가 1차 또는 2차에 그쳐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이상의 처분사유 및 그처분기준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처분사유		처분기준	
적용법령	금지행위	적용법령	1/2/3차 위반
식품위생법 75조①18호	「성매매 처벌법」 제4조 금지행위	시행규칙 89조 [별표23] II. 3항 14호 영업허기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식품위생법 75조①13호, 44조①	업소 내 풍기문란행위 (6호 다목)	시행규칙 89조 [별표23] II. 3항 10호 기목 2)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시행규칙 89조	영업허기취소 영업정지 2월
시행규칙 57조 [별표17]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6호 티목 5) 업소 내 신랑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6호 가목)	II. 3항 10호 기목 2) 시행규칙 89조[별표23] II. 3항 10호 기목 3)	영업정지 3월 영업허기취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허기취소

1, 2차 우반행위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과징금액은 연간매출액에비례하여 정하여지는 일정금액을 영업정지일수에 곱하여 계산)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본문)

(2) 기획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파견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8조는

- 파견사업자가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27) 식품위생법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같은 법 제97조 제6호). 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자 준수사항 우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 항 위반을 이유로 기획사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에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 임시 서술하였듯이 양자는 별개의 제도로서 병행 가능하다.

- 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의 선고를 받고,
 -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파견사업자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유는 원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파견법 제8조). 그러므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처분이 내려지고 나서 이러한 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획사가 ①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②벌금형, 금고형, 징역형(단, 집행유예는 제외) 등의 선고를 받은 후 ③그 집행이 종료(벌금 납부, 징역형집행종료 등)된 경우, 기획사의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또는 지청)에서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기획사는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못한다. 앞서 보았듯이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가 취소되면 기획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공연추천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졌는데도 관할 지방노동청이 허가취소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허가취소조건이 갖추어진 사실을 신고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고, 위의 사실을 확인한 관할 지방노동청은 반드시 기획사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지원

1) 의료지원

(1) 초기 의료지원 과정

내담자의 건강상태 파악 → 지원 가능한 병원 찾기

-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 찾아갈 수 있는 경우
-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 찾아갈 수 있는 병원

상담원은 내담자와 초기 상담을 진행할 때 법적인 호소 이외에도 몸이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서 확인한다. 건강에 대한 문제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듯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므로, 내담자가 본인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담자 의료 지원 시 통역 지원을 활용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사전달이 원활하도록 돋는 것이 좋다.

외국인 건강보험

원칙적으로는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 E-6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보험료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적다.

[보험가입절차]

1. 최초취득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초과한 날. 다만,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 취업, 결혼 이민자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

2. 신고절차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①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1부,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 ②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출입국사실증명원 (여권) 및 규칙 별표8에 의한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
- ③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출입국사실증명원(여권) 및 규칙 별표8에 의한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

*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인정하는 자(입국일 취득)

- 유학 : D2(유학) 및 재외국민 중 유학생(재외국민만 재학증명서 징구)
대학원 이하에 재학중인 자(대학생, 대학원생은 지역 추가증 대상과 동일)
- 취업 : 외국인 중 D5, D7~D9, E1~E10, H2, 재외국민(취업증명서 징구)
- 기타 : 결혼이민자(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징구)

그러나 일정한 경우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디가 아픈지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설명을 해도 알아듣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때에는 우선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을 알린 후 검진을 통하여 내담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상담원은 내담자가 호소한 내용을 토대로 건강상 문제나 자가 진단되는 부분, 혹은 병원 진료 중인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종합 건강 검진 또는 각 분과별 진료를 통해 총괄적인 진단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내담자의 의료 지원 욕구를 확인하고 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내담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편안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주 여성들의 경우 의료 보험이 없기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도 많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가능한 상담소와 연계된 병원이나 외국인 의료 공제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 의료 공제회]

-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 02-3147-0516
- 희년 의료공제회 02-854-7828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산재 보험 등 각종 의료 보장 제도에 따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등 소외 계층에게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하다. 상담원은 내담자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지원 대상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간단한 면담을 실시한 후 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총 64개)]

(2010.5.30 현재)

시·도	의료기관	비고	시·도	의료기관	비고
서울(6)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000	강원(5)	원주의료원	033-761-6911
	서울의료원	02-3430-0200		삼척의료원	033-572-1141
	국립중앙의료원	1588-1775		강릉의료원	033-646-6910
	시립동부병원	02-920-9114		속초의료원	033-632-6821
	마리아수녀회도티기념병원	02-351-2300		영월의료원	033-370-9101
	외국인노동자지원용의원	02-833-9966		청주의료원	043-279-0114
부산(1)	부산의료원	051-507-3000	충북(3)	청주한국병원	043-222-7000
대구(1)	대구의료원	053-560-7575		충주의료원	043-841-0114
인천(6)	인천의료원	032-580-6000		천안의료원	041-570-7200
	인천적십자병원	032-280-2114	충남(5)	서산의료원	041-689-7000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032-540-9114		홍성의료원	041-630-6114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1577-9199		이화여성병원	041-579-1400
	성세의료재단 성민병원	032-580-8551		공주의료원	041-855-4111
	김단립종합병원	032-590-0114		전북대학교병원	063-250-1114
광주(4)	광주기독병원	062-650-5000	전남(3)	예수병원	063-230-8114
	전남대학교병원	062-220-5114		남원의료원	063-620-1114
	첨단종합병원	062-601-8000		부안성모병원	063-581-5100
	이연인과병원	062-380-5800		군산의료원	063-472-5000
대전(6)	대전성모병원	042-220-9114	경북(6)	순천의료원	061-759-9114
	충남대학교병원	042-280-7114		강진의료원	061-433-2167
	대전중앙병원	042-670-5114		목포시의료원	061-260-6400
	대전선병원	042-220-8000		상주적십자병원	054-534-3501
	을지대학교병원	042-611-3000		포항의료원	054-247-0551
경기(6)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031-888-0114	경남(6)	김천의료원	054-432-8901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031-828-5000		인동의료원	054-850-6000
	경기도의료운파주병원	031-940-9100		울진의료원	054-785-7000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031-639-4800		인동성소병원	054-857-2321
	경기도의료원인성병원	031-8046-5000		미산의료원	055-249-1000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031-539-9114		진주의료원	055-771-7000
제주(2)	제주의료원	064-720-2222		통영적십자병원	055-644-8901
	서귀포의료원	064-730-3106		거창적십자병원	055-944-3251
				한국산제의료원창원병원	055-282-5111
				청원피드마병원	055-270-1000

아래와 같이 각 지역의 사회 복지 단체에서 실시하는 무료 진료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진료 서비스 제공 시설 (총 10개)]

시·도	복지기관	비고	시·도	복지기관	비고
서울(2)	자구총사랑나눔	02-863-9966	경기도(4)	외국인비전센터	031-796-1881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2-6900-8000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031-339-9133
부산(1)	한국외국인선교회	051-971-7687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	031-878-6926
	인천(1)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엠마우스	031-257-8501
광주(1)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062-956-3353	충남(1)	천안외국인노동센터	041-564-3818

(2) 외래 진료 이용 방법 및 절차

상담원은 외래 진료에 관한 내담자의 욕구가 있거나 검진결과 진료가 필요할 경우 내담자와 진료 방문상당 약속을 조정한 뒤 병원을 방문하여 내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진료 신청서 작성(이름, 주민등록번호)
- ② 예약,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접수
- ③ 외래 초진 진료 및 필요시 각종검사 실시
- ④ 수납 및 재진 예약
※ 원내 처방: 병원 약국에서 투약받는다.(ex/면재영 신경정신과)
원외 처방: 병원 외래 약국에서 처방전을 발급받는다.(ex/이상태 신부인과)
- ⑤ 처방전 발급 및 결재

병원 진료에 상담원은 보호자 역할로 접수, 진료 후 통역과 함께 진단명에 대해서 정확히 들은 다음 내담자에게 설명하여 그의 이해를 돋는다. 수납과에 구조지원비 카드(의료지원비)로 수납 처리한다. 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은 2장으로 한 장은 약국, 한 장은 환자보관용)을 가지고

인근 약국에 들려 처방을 받아 카드(구조지원비)로 지불하고 복용 방법을 안내 후 내담자와 다음 약속을 한다.

(3) 응급 의료 기관 이용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19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거나 연락을 대신 취해준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1577-1366 등의 통역서비스(p.105 무료진료서비스제공시설 참조)를 이용하여 119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감기, 배탈 등 가벼운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 정보, 응급 처치 요령 및 의료 상담을 **응급의료정보센터 국번없이 1339**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내담자의 경우 상담원이 1399를 통하여 방법을 안내 받은 다음 통역을 통하여 내담자에게 전달한다. 상담원은 응급실로 동행하고 보호자 및 진행 과정을 확인 후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및 입원 절차를 밟는다.

(4) 입원 진료 이용 방법 및 절차

내담자가 입원을 결정해야 할 경우 상담원은 내담자와 약속을 조정한 뒤 병원을 방문한다. 각 외래의 진료 의사가 입원여부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내담자의 의사에 따른다. (입원 결정서 또는 입원 지시서 발급)

※ 건강보험증, 식사도구(수저, 컵 등), 세면도구, 실내화 등을 내담자나 보호자(가족, 친지 등)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경우나 갑자기 입원을 결정하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이 준비한다.

(1) 입원 수속

원무과 입원 창구에서 입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보호자는 가능하면 혈연 관계 가족들로 작성 후 병실 배정 받도록 하지만, 외국인 내담자의 경우 혈연 관계 가족들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측에 설명하여 상담원을 보호자로 한다. 기준 병실 이상은

상급 병설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2) 입실

배정된 병동의 간호사실에서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고 해당 병실에 입실한다.

※ 입원진료·주치의 주도로 검사, 투약 및 수술 등 진행. 장기간 입원할 경우 진료비의 중간 정산

(3) 퇴원 결정

※ 주치의사의 퇴원 결정 통보에 의하여 퇴원 수속 시작, 퇴원시 주치의가 퇴원 결정 통보를 하면 퇴원 수속이 시작되며 퇴원 후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같은 병원을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집 근처 병원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때, 인근 병원 이용시 주치의 소견서, 진료 기록부 샘본 등을 받는다)

(4) 퇴원 수속 후 귀가

퇴원 진료비를 통보받으면 보험증을 가지고 진료비를 납부한다. 진료비 납부 후 퇴원 수속 완료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고 퇴원약을 수령하고 외래진료 예약 접수 후 귀기한다.

2) 자활 지원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본국으로 귀국했을 때 그 곳에서 응용 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활 지원 제공과 한국에 머무르면서 제공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자활 및 그 밖의 자활 지원에 대한 다각적 시각이 필요 할 것이다.

(1) 자활 지원

- ① 담당 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활 지원에 대한 내용(사회·문화·경제)을 설명하고 내담자의 자활에 대한 욕구가 확인되면 법률/의료와 더불어 자활 지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② 내담자가 경제적 자활을 원할 경우 내담자의 자활 욕구가 분명하더라도 담당 상담원은 한국어 구사 능력 및 일정 학력을 요구하는 곳인지에 관한 내

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안내해야 한다. (현재 내담자의 상황에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③ 상담소의 경우 운영 지침상, 자활지원과 관련된 직업훈련비가 직접 지출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직업훈련을 받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일반지원시설의 이용자 등록과 더불어 자활지원센터에 연계되어야 함을 안내한다. 반면, 사회·문화적 지원의 경우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2010.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로 지원할 수 있다.

(2) 일반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연계시

- ① 자활의 욕구가 있어 타 기관에 연계되어 지원이 필요한 내담자가 있을 경우, 담당 상담원은 기본 인적 사항(초기면접기록지 활용을 하되, 실 거주지, 언어, 학력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파악한다. (ex. 대출의 필리핀 내담자가 보육교사가 되고 싶어 한다면, 필리핀에서의 학력이 내국에서 인정되는지 여부와 언어 여부는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여 안내하여야 함.)
- ② 내방 상담을 통해 자활의 구체적 욕구를 파악하고 센터의 자활지원을 안내하며 직업훈련의 욕구가 있을 경우 상담소에서 직업훈련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타 기관에 연계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③ 욕구 파악 후, 거주지와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반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를 안내하고 내담자가 결정할 수 있게 돋는다.
- ④ 내담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관련 기관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내담자에게도 타 기관에 연계되는 점에 대해 다시 고지한다.
- ⑤ 관련 기관이 선정되면 일정을 잡고 내담자와 함께 방문한다.

(3) 머무를 곳

여성의 안전상 등의 이유로 보통 상담소와 쉼터는 분리되어 있다.

■ 쉼터

현재 외국인 폭력 피해 여성과 관련된 (여성부 지원) 쉼터가 전국적으로 세 곳 (서울 벗들의 집, 안산 엘피스의 집, 창원 여성의 집)정도 있지만, 내담자가 법률 지원 및 직업 훈련, 귀국 등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 전담 시설로 연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긴급 구조, 형사 및 민사 사건 지원 등 신속성을 요구하는 경우와 지속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기관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 내 외국인 쉼터 또는 일반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와 상담소에서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경제 활동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무리 쉼터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일정 수입이 절실하다는 내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명심하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거주하게 될 쉼터에서는, 법률 지원과 동시에 자활 지원을 위해 각 관련 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에도 연계 요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내담자가 경제적 압박 때문에 사건을 포기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은 ‘쉼터’라고 하면, ‘수용 시설’과 같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쉼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쉼터에 연계 되었다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 때문에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담당 상담원은 쉼터를 연계하기 전에, 미리 관련 시설(쉼터 내 생활 규칙 등 관련 수칙)들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뒤, 내담자에게 전달하고,

본인의 충분한 숙고 끝에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원은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외국인 관련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여 준비된 자세로 외국인 내담자들을 설득하고,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쉼터)		
시설명	지원내용	홈페이지/연락처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무료숙수제공, 법률(형사 고소, 출입국 관련 업무), 의료, 귀국, 직업 훈련, 심리 치료 지원 등	031-611-9027 010-6690-9027 (플리핀상담원직통)

■ 상담소

상담소는 쉼터와 달리 자활 지원이 제한적(직업훈련비 지출 불가능)으로 제공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직접적인 지원보다 타 외국인 인권지원 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자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경제 능력 향상 지원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창출)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경우 언어의 한계, 학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에 있어 몇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활기관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주민센터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한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 사회·문화적 능력 향상 지원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온 여성들에게 한국사회는 매우 낯선 환경으로 인식 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생활적응능력(한글교육, 대중교통 이용하기, 문화생활

누리기, 마트 이용하기 등 내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의 요구는 불가피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를 비롯한 각 지역의 이주여성인권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민센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생활, 한국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귀국지원

여성부에서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해 귀국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부 위탁 시설인 두레방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에서만이 실질적 귀국 비용인 항공 티켓을 제공하고 있다. 귀국 지원은 이외에도, 공항에 함께 동행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권은 물론, 외국인 등록증 등 기본적 신분증 조차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1. 여권 재발급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자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만 하며, 2. 외국인 등록증 없이 출국시 본인에게 부담되는 과태료와 3. (사업장 탈출 후 비자 만료되어 출국할 경우) 출국 신고서를 공항 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되도록 공항에 동행하여, 각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제안한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미등록 상태의) 본인 처지 때문에, 공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매우 불안해하며, 특히, 모든 미등록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출국 신고 서류는 오로



지 한국어로 되어 있고, 자신의 위법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서류에 대해서 서명해야만 출국을 허락받을 수 있다.

출국을 희망하는 사범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서명하는 내용에 대해, 출입국에서는 최소한 영어로라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새축할 뿐이다.

피해여성의 귀국시 상담소와 연대하여 여성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해외 유관단체

Cambodia

AFESIP The Observatory on Trafficking in Southeast Asia	www.afesip.org	855-23-884-123 +855 (0)23 980001 or (0)23 88097
--	--	---

China

All-China Women's Federation UNIAP China Office	www.women.org.cn www.no-trafficking.org	86-10-6521-1639 ext. 222 (861) (0) 6 513 3997, 6 510 3317
--	--	--

Philippines

Center for Overseas Workers Third World Movement Against the Exploitation of Women	www.tw-mae-w.org	63-2-913-6439 63-2-913-9255
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 (TUCP)	www.trafficking.org.ph	63-2-433-9440
Asia ACT's Against Child Trafficking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Asia Pacific	http://stopchildtrafficking.info/ www.catw-ap.org	(632) (0) 929-0822 63-2-426-9873
ECPAT UNODC	www.ecpat.net www.unodc.org/unodc/en/trafficking_human_beings.html	(63) (0) 2 920 8151; (63) (0) 2 441 5108 (43) 1 26060 0

Russia

Angel Coalition	www.angelcoalition.org	(7)(95)783 5865 (Moscow)
-----------------	--	--------------------------

Thailand

Foundation for Women Hotline Center Foundation (HCF)	www.womenthai.org http://www.Hotline.or.th	66-0-2-435-1246, 66-0-2-433-5149 66 (0) 2277-8811, 66 (0) 2277-7699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GAATW)	www.gaatw.org	66-0-2-864-1427/8
UNIAP	www.no-trafficking.org	(66) (0) 2 288-2575

Mongolia

CentreforHumanRights andDevelopment	www.owc.org.mn	97611325721
-------------------------------------	--	-------------

Vietnam

Research Center for Family Health and Community Development	http://cefacom.org.vn	(84) (0) 537 5700
Mobility Research and Support Center	www.mrsc.org.vn	84-0-8-862-9670
AFESIP	http://www.afesip.org	(84) (0) 8 832 65 23
UNIAP	www.no-trafficking.org	(84) (0) 4 942 6511

4)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의 한계와 도전 과제

성매매피해자라면 누구나 현재 지원 체계 내의 상담소,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들이 내국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여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는 외국인지원시설이 아닌,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일반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을 외국인이 이용할 때의 한계점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1) 불안정한 체류자격

내국인의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라면 형사·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느냐와 무관하게 상담소,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E-6 등의 특정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라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해야만 기타 비자(G-1)로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체류 자격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들은 안정적으로 자활지원 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하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라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전환시켜주는 일정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2) 통역 지원의 부족

상담소 및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들 중 상당수는 통역이 가능한 상담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과 같이 내국인을 중심으로 지원해 온 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심층 상담이나 조사 동행을 할 때는 이주여성간접지원센터의 통역 상담원의 도움을 받지만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전화, 면접 상담시 통역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통역 지원의 부족은 결국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게 만들므로 성매매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통역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입소자·이용자 정원의 부족

내국인 지원시설의 경우에 외국인이 이용하고자 하여도 시설의 정원이 차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각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마다 내국인 정원 외에 외국인 정원을 따로 두어 외국인이 쉼터나 자활지원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정원이 차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지원시설의 쉼터 생계비 지급 곤란

현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에서는 입소자의 주·부식비 및 피복비는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지출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상 생계비 급여가 곤란하여 주·부식비 및 피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내국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반지원시설 생계급여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
실제 사건 지원,
어떻게 했나?

03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성매매피해 입기 전 구조된 인신매매 피해 사례]

필리핀에서 NGO활동가로 일했던 베나딧은 가수 활동 자격으로 필리핀 에이전시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 프로모션 A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에 왔지만, 오자마자 클럽 업주에 인계되어 동료 여성들로부터 “성적 서비스와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교육을 받게 된다. 다행히 한국에 올 때 노트북을 챙겨 와서 친척과 매신저로 연락이 닿았고, “자신이 인신매매되었다”며 “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베나딧의 친척은 다행히 한국의 두레방이라는 단체와 국제적 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지역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였고, 베나딧은 간신히 몸만 빼져 나와 평택의 쉼터 상담원과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상담원은 근처 지구 대 경찰을 불러, 그들과 함께 숙소에 들어가 베나딧의 집을 찾았고, 경찰서에서 기다렸다가 매니저가 가지고 온 여권을 받아 바로 베나딧을 쉼터로 인도할 수 있었다.

▣ 조차내용

본인은 계속 시설에 있기를 원했으나, 귀국을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본인은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고소 또는 소송하기를 원했지만, 성매매 피해 경험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못했다.

▣ 시사점

여권을 본인들이 소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한 (감금된 경우 못지 않게) 자유롭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 여권 외에도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해 등록 절차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이것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출국 시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면 본인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여권 또한 대사관의 협조로 다시 재발급 받거나 이와 동일한 서류(Travel

Document)로 대체하여 출국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분실했을 경우에 한다. 따라서 피해 여성들은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 또 한번 거짓으로 자신의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 또한 매우 오랜 시간 많은 피해자들이 여권을 매니저들에게 압수 당한 채 되돌려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여권을 포함해 자신의 신분을 입증할만한 것이 없어, 피해업소에서 탈출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도 많았다.

[성매매 현장 속 성폭력, 인신매매 피해 사례]

파라는 필리핀에서 공장 노동자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특히 그녀의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 외국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파라는 노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경쟁 콘테스트에 참가했다. (누군가가 가수로 외국에서 일할 좋은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게다가 파라는 Apple(애플) 엔터테인먼트 리크루트 에이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한 달 후 파라는 에이전시를 통해 자신이 VTR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파라는 신체 검사와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세미나(이틀 동안)를 받았다.

그녀는 아나벨 ****의 사무실을 소개받았는데, 여기서는 한국에 들어가기 위한 서명들을 필요로 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필리핀에서 받기로 했다. 그녀는 엔터테이너로서의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녀가 믿었던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했고, 빙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2009년 4월 27일 그녀는 필리핀을 떠났고 에이전시 사장에 의해 에스코트를 받았다.

2009년 4월 28일 아침 6시 30분 파라는 인천 공항에 도착했고, 그녀는 미스터 ***에 의해 픽업을 받았고, 28일 저녁 6시 30분, '골든 제이트'(명택 신장동)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파라는 크리스탈 클럽으로 옮겨졌다. 크리스탈에서 일하는 동안 미스터 ***은 하나의 구직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드링크 쿼터(할당량)였고, 그 외에도 바파인(성매매)을 강요받았다. 다른 여성들은 그

것을 해내고 있었다.

파라는 동두천의 다른 클럽인 사나두 클럽으로 옮기기 전 병에 걸려 고생한 적이 있는데, 클럽 업주는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전 클럽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녀는 고용주로부터 그 어떤 돈도 받지 못했다. 동두천에서 파라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서 편도선염이란 판정을 받았다.

2009년 7월 25일 그녀는 기획사 사장의 아들에 의해 학대로 박수를 받고 버스 터미널로 보내졌다. 그녀는 거제시 옥포로 가는 버스를 혼자 탔고, 옥포에 새벽 12시 15분에 도착했다. 그 곳의 E클럽 업주가 파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파라는 그녀의 옷을 바꿔 입고 일을 시작하도록 지시받았다. 한 시간 후 그녀는 프랑스인과 함께 나가도록 지시받았고, 바파인을 나갔다. 파라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손님들과 함께 나가도록 강요받았다. 그녀에게는 거절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둘째 밤에는 다시 그녀는 업주에 의해 그리스인과 함께 나가도록 지시받았다. 그녀는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그녀는 업주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손님은 350,000원을 (E클럽 사장에게) 파라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지불했다.

며칠이 지난 후, 파라는 그리스-러시안 고객에 의해 바파인을 나갔다. 이번에도 거부했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호텔에서 그녀는 손님에게 저항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입에 강제로 약을 먹였고(힘을 잃도록), 파라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녀의 팔이 침대 기둥에 묶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벌거벗은 상태였다.

파라가 동료와 함께 살던 숙소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그 클럽 업주와 동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관하지 않았다. 2009년 9월 18일, 그녀는 마침내 그 클

립을 빠져나왔고, 평택의 친구 집에 갔다. 그리고 평택 친구의 도움으로 쉼터로 옮기게 되었다.

▣ 조차내용

파리는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강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폭력 경험 등 매우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더 이상 당시의 경험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면, 업주가 아닌 기획사를 상대로만 고소했다. 동일한 파간업체 소속 필리핀 연예인 2명을 추가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각 업소의 업주들과 파간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대질 조사한 뒤 별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항고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고소와 노동부 진정 절차(임금체불 문제)를 통해, 파리의 파간업체는 본인이 알고 있던 'F' 기획사가 아닌,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파간업체 'S' 기획사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S' 기획사는, 이미 오래전 사무실 문을 닫고 행방을 김춘 상태였다. 따라서 그 동안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월급을 챙겨주었던 'F' 프로모션의 사장은 임금 체불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며 변명했고, 노동부에서는 실제 계약서 상의 'S' 기획사의 K씨를 상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기획사 사장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기소 중지된 상황이다.

▣ 시사점

위의 사건을 통해 상당수의 한국 파간업체들이 현지에서 활동 가능한 (개인) 프로모터와 접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연예인들을 모집, 이송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개인 프로모터들이, 한국 정부의 외국인 연예인 파간업체 허기를 받은 프로모션의 하청업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 여성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1년 동안 한국 정부에 보고된 소속사의 정식 직원도 아닌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의해 이송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무를 대행하는 업체 또는 개인과 한국 정부의 파간업체 허기를 받은 실제 고용주 간의 거래가 가능한 것은, 결국 연예인을 둘러싼 임금 쟁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외국인 연예인들은 자신도 모른 채 이와 같이 복잡한 관계에 의해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나누어 쟁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서류상의 소속사와 실무를 대행하는 소속사가 나누어 있는 것은 분명 불법 행위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소속 연예인(피해자)은 자신의 불분명한 위치에 대해 당혹감과 불안감을 겪어야만 한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를 향해 항의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양자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위장 결혼을 통해 성산업에 유입된 인신매매 피해 사례]

리디아는 2008년 11월 8일 F-2-1비자를 받고 같은 러시아 여성 3명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 타주캔트에서 10년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김이리나를 통해 조씨(현지에서 결혼소개업자로 활동, 김이리나와는 동거하고 있는 사이로 알고 있다.)라는 브로커를 만나게 되었다. 그 후 조씨가 한국 사람인 김씨를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나게 하여 결혼 절차를 밟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결국 F-2-1비자를 받게 되었다.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리디아는 서울 미아리(휴게텔), 안산(맛사지업소) 지역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브로커들은 리디아에게 일단 한국에 오게 되면 핸드폰을 조립하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면서 취업에 대한 약속을 해주었고, 바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바에서 일하면 팁을 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리디아는 원래 미용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용사 학원도 다니고 한국의 발전된 미용 도구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하자 그러한 기대는 물론, 자기들을 믿기만 하라고 했던 이리나와 조씨의 행동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리디아와 다른 러시아 여성들을 지하방에 가두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할지 설명했다. 그들은 휴게텔과 맛사지 업소라고 하는 곳에서 맛사지가 아닌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디아는 경찰 단속 때문에 처음 일했던 서울 업소에서 안산의 맛사지 업소로 옮겨졌다고 했다. 조씨와 김이리나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여성들을 노예처럼 끌고 다녔다. 그들은 안산에서도 서울에서처럼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객들과의 성관계는 필수적인 코스였다. 여성들은 울면서 그들의 설명

을 들어야 했고, 그것을 이행해야 했다.

리디아는 울면서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김이리나는 “딸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고, 심지어 리디아를 어디론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일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곳을 가리키며, “장녀촌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조씨는 그렇다쳐도 김이리나는 여성들과 매우 밀접하게 지내면서 관리·통제했고, “한국에서 성매매한 사실과 그로 인해 성병에 걸린 사실 등”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그들은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입국 비용으로 350만원을 갚으라고 했던 결과는 달리 빚을 계속해서 늘이기 시작했다. 한국에 온 후 4개월 동안, 리디아는 그들로부터 한 달 생활비(용돈)를 조금씩 받은 것 말고는 수입은커녕 1,850만원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조치 내용 및 결과

결국 2008년 12월 30일 안산 맛사지업소에서 리디아를 포함한 4명의 감금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 경찰서 경찰들을 통해 구출되었다. 나머지 3명은 본국으로 돌아갔고, 리디아는 두명의 브로카들이 처벌되기를 바리는 심정으로,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한국에서 간신히 숙식만 할 수 있도록 친구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본국으로 돌아간 여성들도 리디아처럼, 자신들을 철저히 속이고 성매매를 시켰던 현지인 김이리나와 한국인 조씨가 처벌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당장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고 리디아가 대신 전해주었다. 그 후 2월 1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그들(조씨와 김이리나, 김이리나는 이미 출국한 상황) 모두가 ‘기소 중지 되었다는 결과에 매우 실망한 리디아는 한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두레방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 외의 사건 연루자인 서류상의 배우 김씨는 위장 결혼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미 리디아를 실종신고(결혼 중가입자인 조씨의 지시에 따라)까지 한 상태였다. 또한 리디아가 구조된 성매매업소의 업주는 1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를 검찰이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경찰에 신고한 리디아는, ‘성매매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다. 왜냐하면, “위장 결혼까지 감행하여 한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실에 대해 스스로 자백했기 때문이다.

■ 시사점

사실, 리디아는 한국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거나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이미지에 한국행을 결정한 것인데, 김여리나는 조씨를 통해 위장 결혼의 방법으로, 리디아를 한국으로 입국시켰다. 리디아는 당연히 자신이 위장 결혼으로 비자를 받게 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종업원들 의 지시에 따라, 한국인인 김씨를 만나 결혼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일을 직접 해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걱정은 되었지만 그와 같은 방법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이고, 김씨와는 한국에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는 그들의 설명에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리디아는 현지인 브로커를 놓쳤고, 행방을 알 수 없어 기소중지된 한국인 브로커를 체포하지 못하는 한국 수사 기관에 대해 실망한 채, 그토록 원했던 이혼 소송 또한 포기하고 자국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위임장(주후 수사가 다시 진행될 경우, 두려방에 그 결과를 통보해주 고 필요하다면 수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요청 등을)을 받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 했다. 주후 검사가 아닌, 대신 신고해준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검찰로부터, “한국인 브로커가 불법으로 자백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위장 결혼에 대한 쌍방 책임, 책임의 분배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취급받 을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떳떳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중적인 입장으 로 인해 자진하여 출국하기로 하거나 피해자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전용유통업소에서 ‘한국인’에게 성매매 강요된 사례]

업주 아들(성매매 알선)의 한국인 친구들을 상대로 성매매 피해를 입은 체리 와 메리는 같은 클럽에서 일했다. 실제 업주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의 아들 과 바텐더인 한국인 여성을 고소했다. 실제 업주와 그의 아들 대신 업주의 다른 아들이 대질 조사에 응했고, 체리와 메리가 괜히 미군과 결혼하려고 업소

를 나와서 거짓말을 꾸며낸다고 주장했다. 성매매를 함께 나갔던 여성이 여전히 그 곳 업소에서 일한다고 했고, 오히려 피의자들이 동료 여성들을 참고인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한 동료 여성 로즈는 경찰 조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업소를 탈출했고, 체리와 메리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사실대로 바꿔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조치내용

참고인 로즈는 쉼터에 와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 요청서(p. 154 이하 참조)와 함께 들고 경찰서를 방문했다. 하지만 담당형사는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진정서로 제목을 바꿔 제출하도록 권유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참고인 조사를 다시 받았으나 성매매, 성매매 알선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담당 형사의 소견을 들을 수 있었다.

시사점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업소 자체 권한에 달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부여하고 있는 주류의 면세 혜택 제공의 명목은 이들 외국인 전용 클럽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화 획득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외국인 전용유통시설이 한국인을 접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정부의 외국인 유통시설업소들에 대한 혜택 제공은 법적 명목을 상실하는 것이고, 동시에 외국인 대상만으로는 영업이 어렵다는 현재 업소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이들 업소들에게 제공되는 주세감면실적에 대한 현황이다. 해당 업소들은, 2006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감면 혜택을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2가지 의혹이 가능하다. 첫째는, 이들은 주류 판매에 의한 수익이 아닌 다른 영업 수단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요가 없는 정부의 주세감면 혜택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주세김면실적(2000-2008)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229,952	161,994	204,073	224,325	216,968	247,432	255,803	223,446	292,955
수출	119,347	123,980	166,311	183,296	172,596	195,242	207,595	176,918	245,166
주한국제연합군, 주한미군납품	6,502	4,631	2,514	5,397	6,476	3,244	265	495	254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부대에 납품	900	-	6	-	-	61	6	1	-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등에 납품	205	201	189	464	318	647	135	165	623
외국선원 휴게소에 납품	-	-	-	-	-	-	?	?	?
국군납품	31,256	28,414	30,670	30,953	31,322	46,734	46,778	44,948	45,936
주한외국군, 외국인선원전용 유형음식점 납품	2,533	3,305	2,141	374	166	82	-	-	-
기타	69,209	1,463	2,242	3,841	6,100	1,422	1,024	919	976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2008년도부터 외국선원휴게소 김면세액은 완전히 제외되어 나오고 있음.)

[수사 진행 중 출입국 단속으로 강제 퇴거된 사례]

대규모 조직의 기획사를 상대로 은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에 걸렸다. 비밀 수사로서 피해자의 비자 조차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에 걸린 것이다. 다행히 경찰의 협조 공문이 출입국사무소에 받아들여져 벌금을 내면 비자와 함께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본인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보호소에서 나온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자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했다. 결국 그 동안의 기획 수사는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한창 진행했던 수사 결과물들은 전혀 소용이 없어지게 되었다.

■ 시사점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비자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실질적 지원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자신의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취업의 기회가 전제되지

않은 체류 자격 제공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어렵게 업소를 탈출하여 탈 인신매매·성매매한 뒤에도 쉼터나 NGO에 가야 할 필요성을 찾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호소 안에서 형사 고소 진행하고 있는 사례]

위 사건 피해자의 소개로 보호소 안에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 리첼은 동두천 지역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가수로 일하지 않았다. 클럽에서 도망나온 뒤, 공장에서 실제로 일하기 전 실습 과정 중 출입국 단속에 걸려 보호소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 진행상황

현재 담당 형사가 보호소에 직접 면회가서 고소인 조사를 실시했다. 통역 지원을 통해 고소인 조사에 동석했고, 추후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사건 판결이나 서 본인이 피해를 입증하게 된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 시사점

사건 판결 후의 체류자격 여부는, 전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더욱 피해자 본인이 보호소에 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건 종결 후에는 피해자라 할지라도 체류 자격을 연장해줄 만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이 기소되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쉼터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 한다.(일시보호해제 요청시 p.157 이하 & 162 이하 참조)

[약취 · 유인죄로 고소한 사례]

메리는 일반적인 사례의 피해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프로모터를 통해 E-6비자로 입국하여 성매매에 유입되었다. 성매매 알선, 강요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법률지원을 진행하는 경우 성매매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성매매를 입증하더라도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모집, 한국으로 인신매매한 기획사와 프로모터까지 처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리의 경우 약취유인죄로 입주와 기획사 매니저, 프로모터를 고소하였다. 진술서와 고소장에도 필리핀에서 프로모터가 어떻게 메리를 유인하였는지에 대한 부분, 가수로 모집되어 보컬 트레이닝을 하고, 합숙을 하고, 오디션과 VTR 테스트를 거쳤다는 부분, 계약시 성매매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부분, 공항을 통과할 때 불법적으로 에스코트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했다는 부분 등을 강조하였다.

■ 진행상황

경찰조사 중인 상황이다. 진술서와 고소장에서 약취, 유인을 강조하였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성매매 피해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변호사 보충의견서를 검사실에 제출하여 이 사건의 핵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약취, 유인에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 시사점

피해자가 약취, 유인된 부분이 대부분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속에 필리핀 현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리핀 경찰이나 대사관과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리 목적의 약취, 유인으로 고소를 한다해도 결국 성매매 부분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 현실이다. 필리핀 현지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가 절실히다.

[외국인전용유통업소에서 일하다가 성매매로 인해 (한국인 손님에 의해) 임신한 사례]

한국에서 일하다가 성매매로 인해 임신이 되어 급히 귀국 조치된 메리안에게서, 아이의 아버지인 한국인을 찾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업주가 성매매를 시켜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업주의 책임도 함께 묻고 싶다고 했다. 같은 업소에서 일하다가 성매매 강요를 당한 아이린의 참고인이 되어주고 싶다고 한 메리는 현재 임신 8개월이다.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메리안이 한국인을 상대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성매매 기소 사례]

나르다는 25살이며 필리핀 바탕가스에서 왔고 5살이 된 아이가 있다. 필리핀에서 한 밴드의 Lead Singer(리드 보컬)를 했다. 2009년 2월에 친구인 제이시벨과 Makiling Agency(마킬링기획)사무실에 찾아갔다. 마킬링 기획사가 나르다에게, 한국에서 가수로 일하면 모든 필요한 출국 서류 및 처리 비용을 알아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필리핀보다 짧은 시간 일해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으며, 이 제안을 나르다의 엄마에게 이야기했고 나르다의 엄마는 동의를 하였다. 그래서 나르다는 마킬링 기획사와의 서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2009년 3월 7일 밤 6시 나르다와 3명의 필리핀 여성들은 공항에 도착했고, K기획사의 직원을 만나서 거제시에 있는 Ace Club(에이스클럽)으로 갔다. 10시30분 에이스클럽에 도착하자마자 클럽 주인은 방금 도착한 여성들에게 바로 일할 준비를 하라고 강요했다. 그 날 밤 야한 옷을 입고 손님들과 술을 마셨다. 나르다는 자신이 가수가 아니라 야한 옷을 입고 손님들과 술을 먹어야 해서 밤새 울었다.

에이스클럽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클럽 주인은 여성들한테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약물(무슨 약물인지 모름)을 강제로 복용 시켰다. 나르다는 클럽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나르다는 마마상한테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고 부탁을 했지만 그 부탁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르다는 두 번의 성매매를 강제로 하였다. 2차비는 30만원부터 35만원까지 돈을 받았고 여성들은 그 돈에서 반을 받았다. 하지만 나르다는 한 번도 월급 및 2차비를 받지 못했다.

클럽 주인은 야한 옷 및 악세사리를 가져와 강제로 구입하게 했으며 구입한 물건에 대해 돈을 내기를 강요했다. 에이스클럽에는 CCTV가 6개 있어서 클럽 안을 감시했다. 경찰들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조사할 경우 클럽 매니저는 바텐더들에게 연락하여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여성들은 숙소로 보내게 했다. 이 여성들은 조사 중 진실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있어서 숙소로 보내졌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성들만 남아 있었다. 에이스클럽에는 필리핀 여성이 23명 일하고 있었다. 나르다는 클럽에서 두 달 동안만 일했다.

평택 신장동에 있는 Right Club(라이트클럽)주인과 에이스클럽 주인은 자매 관계였는데 2009년 5월에 라이트클럽에 필리핀 바텐더가 필요하다고 하여 나르다는 신장동 라이트클럽으로 보내졌다. 라이트클럽에서 동료인 한국인 바텐더가 나르다한테 불만이 많아 클럽주인한테 불만을 얘기해서 나르다는 3 개월 동안만 일하고 8월에 다시 거제도의 에이스클럽으로 보내졌다.

에이스클럽에서 일을 계속 하고 싶지 않아서 8월 16일 오전 11시에 친구가 있는 평택으로 무작정(한국말도 모르고 버스 타는 법도 모름) 사람들한테 물어봐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 클럽에서 나온 이유는, 술을 먹어도 쉽게 취하지 않는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하고, 밤마다 술을 많이 마시며 월급은 한 번도 못 받았고, 성매매도 강요당했기 때문이다.

■ 결과

업주, 기획사, 업소 내 매니저, 마마상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업주만 성매매 알선으로만 혐의를 인정받았고, 성구매자 톰(기명, 노르웨이 기술자, H 중공업)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매니저, 마마상, 기획사는 모두 불기소되었다. 이유는 해당 업소에서 나르디와 함께 일했던 3명의 여성들의 반대 진술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지번관 톰도 1회만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현재 항고 신청했으며, 나르디는 협약에 돌아가서 조차 다른 여성들의 진술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p.183 이하 참조)

[수사 의뢰 사례]

거제도 사건들을 진행하던 중에 ****경찰청 ****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한 번도 이와 같은 사건이 접수된 적이 없었으며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으니 케이스가 있으면, 함께 해보자고 했다. 루파의 사건을 의뢰했다.

루파 매이(Ruffa Mae)는 필리핀 마닐라 톤도에서 왔다. 2008년 6월 Tala(동네친구 타라)를 통해 Mango Promotion(망구 기획사)을 알게 됐다. 타라는 2008년도에 경상도 거제시 옥포에 있는 Wonderwoman's club(원더우먼클럽)에서 일했다. Mango(망구) 기획자는 한국에서 2년 동안 가수로 일하면 필리핀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며 루파를 설득했다. 2009년 5월 루파는 Mango 기획사에서 해외 가수로 일하기로 계약했다. 빨리 출국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했지만 여권 발급에는 시간이 걸렸다. 남편과 계약 및 기타 서류 몇 가지에 서명을 하라고 하면서 내용을 읽어 보지도 못하게 하고 설명해 주지 않으며 한국어로 된 계약서에도 서명을 하라고 했다. 루파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원했지만 Mango 기획사의 비서는 무조건 믿고 서명을 하라고 했다. 2009년 7월 5일 21시에 필리핀 공항에서 한국 매니저와 만나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에 탈 때 한국 매니저는 루파한테 술 잘 마시고 섹시하게 몸매를 만들라고 이야기 했다.

2009년 7월 6일 5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매니저는 루파의 여권을 압수했다. 루파가 여권을 왜 가져가냐고 하니 도망칠까 봐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날 저녁 18시에 안정리에 있는 Moca club(모카클럽)에서 일했다. 루파는 자신이 손님 앞에서 춤추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클럽 주인 딸이 루파의 몸과 가슴을 보고 seks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클럽에 보냈다. 모카클럽에서 18시부터 22시까지 일하고 신장동에 있는 Wood Club(워드클럽)에서는 10시30분부터 일했고 23시엔 같은 동네에 있는 또 다른 클럽인 Dynamite club (다이너마이트클럽)에 데리고 가서 23시부터 24시까지 일했다. (여기저기 옮겨서 일함.) 다이너마이트 클럽에서는 급식비를 일주일에 10,000원을 받고 월급은 한 번도 못 받았다. 다이너마이트 클럽 주인이 프로모터에게 루파의 여권을 달라고 했지만 매니저는 주지 않았고, 루파는 다른 클럽으로 옮겨졌다.

■ 진행 상황

수사 기관은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업소 근처에 직접 잠복하여 현장을 직접 포착하고자 했지만, 당일 바피인을 나간 여성은 물론 업소에서 만난 여성들을 근처 경찰서까지 데려와 조사를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루파가 건네 준 정보들을 통해, 성구매자였던 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찾을 수 있었다. 1명(사진확인)은 사실을 자백했고, 경찰은 현재 대부분이 출국하고, 나머지 3명의 행방을 찾고 있다. 현장에서 지炳만은 업주의 진술 역시 다시 번복되었고, 행방을 감춘 동료 여성들 중 한명 이라도 찾아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결국, 수사 기관의 노력과 담당 검사의 의지로, 기소되어, 성매매 알선 등 출입국 관리법, 공연법 위반 등의 처벌을 결정받았고, 피고인은 항소를 신청한 상황이다.

■ 시사점

위 두 사건은 각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인해 기소가 되었다. 특히, 형사 고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매우 의지있게 수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성매매 알선에 대한 혐의만 인정받았을 뿐이었다. 공소장을 통해 담당 검사 또

한 이들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하자들이 고소를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이유는, 자손들의 피해를 입증하고자 했던 목적이 분명한데, 이번 사건들은 단순히 성매매 알선에 대한 부분만 인정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자신 스스로가 성매매 여성이 되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과 다름 없게 되었다. 피의자들이 처벌받게 된 점은, 반기운 일이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 여성으로 둔갑되어, 해석되는 것은, 담당 검사의 잘못된 해석이다. 동시에 알선과 강요를 이분법적으로 나눈 내용 등) 성매매 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성매매 피해 경험 없이도, 성매매 알선, 강요 등에 대해 손해배상(민사소송) 청구한 사례]

Lin(린)은 필리핀 말리타 다바우(동네)에서 왔다. Lin(린)은 친구를 통해 마카티(지역)에 위치한 Mango Promotion(망구 기획사)에 대해 얘기를 듣고 친구랑 찾아 갔다. 한국에서 아티스트로 공연하면서 일할 수 있다고 하여 지난 2009년 6월에 신청 했고, 필리핀 기획사에서 구두로 가수로 일하기로 약속 해주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가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어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Lin(린)한테 가수로 일하며 월급은 35만원을 준다고 기획사에서 말로만 설명을 해줬고 그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

2009년 7월 23일 한국 인천공항에 다른 필리핀 동료 한명과 도착했다. 인천공항에 도착 후 Lin(린)은 한국promoter(매니저)를 만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했고 평택에 있는 Crystal Club(크리스탈클럽)에서 이제부터 일을 한다고 했다. 도착한 날 18시부터 24시까지 일을 했다. 첫 날 Lin(린)의 동료들은 클럽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었다. Lin(린)은 모든 여성들이 야한 옷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것을 보고 놀랐다. Lin(린)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크리스탈클럽에서 일주일에 80점(80만원을 팔아야 되는 점수) quota(쿼터)가 있고 쉬는 날도 없었다. 클럽주인은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급식비 한 달

에 150,000원을 주고 나머지는 여성들 각각 10,000원씩 냈다. 2009년 7월 23일~11월 7일까지 크리스탈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은 2번 밖에 못 받았고, 9월 23일은 80,000원, 10월 23일은 350,000원을 업주로부터 받았다. Lin(린)은 일주일에 80점 쿼터를 채우지 못해 거제시에 있는 AceClub(에이스클럽)으로 보내졌다.

11월 8일 8시쯤 에이스클럽에 도착했다. 첫 날에 에이스클럽 관리인(이름은 모르고 ‘오빠’라고 불렸음.)이 약을 주며 다이어트 약이라고 먹으라고 했다. 직접 Lin(린) 입에 알약을 넣었다. 왜냐하면 약을 안 먹을까봐 직접보고 확인 했다. Lin(린)은 약을 먹고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고 잠도 안 오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마상이 Lin(린)한테 에이스클럽에선 ‘Bar Fine(바파인-성매매)’ 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늦으면 50,000원의 벌금이 있고 미용실 안가면 하루 5,000원의 벌금도 있다고 했다. 11월 15일에 Lin(린)은 동료인 매이리와 함께 손님 1명과 강제로 바파인(성매매)을 나갔다. 에이스클럽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올리비아 모텔로 갔고 손님은 Lin(린)이랑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했고 Lin(린)은 무섭고 처음이라 매이리한테 먼저 성관계를 할 것을 부탁했다. 그래서 매이리가 먼저 성관계를 하는 동안 Lin(린)은 의자 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Lin(린) 차례가 왔을때, Lin(린)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시간을 끌자 술 취한 손님은 Lin(린)을 기다리다 잠이 들어서 Lin(린)은 손님이 자는 동안 매이리와 함께 도망을 나왔다.

Lin(린)은 하루 빨리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 클럽에서 나오고 싶었다. Lin(린)은 동료들이 클럽에서 모두 성매매를 하고 있어 Lin(린)도 계속 일을 하면 성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1월 14일 오후에 두레방 외국인 쉼터에 있는 나르다한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11월 15일 24시~2시까지 바파인(성매매)을 나갔

다가 숙소에 있을 때 나르다, 두레방 쉼터 소장과 경찰(옥포 지구대)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 조치내용 및 결과

Lin(린)은, 위 나르다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거제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매매 피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감금 사실에 대해서만 참작이 될 수 있을 거라 했다. Lin(린)은 아래, 동일 에이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의, 고소인들 중 한명으로, 조사 중, 해당 한국 프로모션에서는, “에이스클럽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 이상, 절대로 그녀를 고의적으로 그 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인 프로모터 (기획사 사장)에 의하면, 인계 과정 중에 쪽오(Lin(린))이 보내져야 할 업소 사장이 개인적으로 에이스클럽으로 인계한 것)가 생겨서, 성매매 업소인 에이스클럽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 시사점

엔터테이너들을 철저히 감시, 관리하는 파견업체도 문제이지만, 많은 경우, 한국 에이전시에서는 업소에 인계한 뒤, 매우 부실하고 소홀한 관리를 하고 있다. 파견업체 사무실과 현지에 동떨어진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별도의 제한적 장치가 없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극적으로 구조된 상황이라고 해도, 실제 성매매 경험 유무에 따라, 사건 무게의 차등을 두고 있는 현 법적 한계로 인해, 실제로 형사 고소 사건을 통해, 사건과 연루된 범죄자들을 상대로, 처벌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 참고자료



Legal Guide for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 상담기록카드

상담기록카드(외국인용)

접수번호			상담방법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사이버 <input type="checkbox"/> 면접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담시간	년 월 일(오전/오후)	:	~ :
성 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남성		
국 적	<input type="checkbox"/> 러시아 <input type="checkbox"/> 필리핀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태국 <input type="checkbox"/> 베트남 <input type="checkbox"/> 몽골 <input type="checkbox"/> 방글라데시 <input type="checkbox"/> 인도네시아 <input type="checkbox"/> 타이 <input type="checkbox"/> 미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락처			
주 소			
통역시스템 활용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용함⇒ <input type="checkbox"/> 영어 <input type="checkbox"/> 러시아어 <input type="checkbox"/> 중국어 <input type="checkbox"/> 일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사용안함		
체류자격	<input type="checkbox"/> 예술·종교 <input type="checkbox"/> 연수·취업 <input type="checkbox"/> 방문동거 <input type="checkbox"/> 결혼 <input type="checkbox"/> 거주 <input type="checkbox"/> 미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체류기간	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상담내용	<input type="checkbox"/> 인신매매 <input type="checkbox"/>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성매매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산업재해 <input type="checkbox"/> 임금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불법체류 <input type="checkbox"/> 출국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 매	상담의뢰인	<input type="checkbox"/> 피해자본인 <input type="checkbox"/> 동료·친구·이웃 <input type="checkbox"/> 기타()	
	현 재	<input type="checkbox"/> 전통형(지역명:) <input type="checkbox"/> 산업형 <input type="checkbox"/> 자영형	
	종사유형	<input type="checkbox"/> 출장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업소유형	<input type="checkbox"/> 성매매업소 <input type="checkbox"/> 식품점객업소 <input type="checkbox"/> 외국인전용클럽 <input type="checkbox"/> 기타()	
	피 해 내 용	<input type="checkbox"/> 탈성매매 <input type="checkbox"/> 빚 <input type="checkbox"/> 갑금 <input type="checkbox"/> 구타 <input type="checkbox"/> 위협 <input type="checkbox"/> 성폭행 <input type="checkbox"/> 인신매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그 외	상담의뢰인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료·친구·이웃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종사시기, 유입계기, 유입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종사유형, 업소경유 구체적으로 		
조치내용-	<input type="checkbox"/> 관련기관연계 <input type="checkbox"/> 심리정서적 지원	<input type="checkbox"/> 지원시설(외국인여성지원시설 등)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현장구조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담원 :		

■ 고소장 예시

고 소 장

고소인 로잘린 (Rosalynn)

고 소 장

고 소 인 로잘린 (Rosalynn)
서울특별시 이하 생략
상담소 (Tel. 02-814-*)

피고소 1. 성명불상(일명 Mr. Kim)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Y프로모션 사장 겸 프로모터, 010-1234-1234)
2. 죄 0 0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Y프로모션 매니저, 010-1111-1111)
3. 성명불상
거제도 옥포동
(B클럽 사장, 010-222-3333)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위 고소인들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나.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다.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고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피고소인 1과 피고소인 2는 2009. 0. 0. 사실은 고소인을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하여 그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음에도 고소인에게 “2년간 한국에서 가수로 일하면 월급 91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2009. 0. 0. 한국에 입국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나. 매매알선 등 행위의 차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피고소인 1은 2009. 0. 0.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가수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을 한국에 입국시키고,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소인 2이 고소인을 인계받도록 하였으며, 피고소인 2는 다시 고소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 및 음란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B클럽(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군을 대상으로 음란공연 및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클럽입니다)의 사장인 피고소인 3에게 고소인을 인계하였고, 피고소인 3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인계받았습니다.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차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매매알선)

피고소인 3은 피고소인 2로부터 고소인을 소개받아 2009. 0. 0.부터 2010. 0. 0.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클럽(B클럽)에서 일하게 하며 위 클럽 손님들에게 Lapdance(손님 무릎에 앉아 스킨쉽을 하며 선정적인 춤을 추는 것) 등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님과 함께 외부로 나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강요하였습니다.

2. 고소 이유

우선 피고소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피고소인 1 성명불상 (일명 Mr. Kim)은 고소인을 한국에 취업시켜 준 프로모션인 Y프로모션의 사장이고, 피고소인 2 성명불상은 피고소인 1이 고용한 매니저이며, 피고소인 3은 거제도 옥포동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인 B클럽의 사장입니다.

가. 제1항의 가정과 관련하여

1) 피고소인 1, 2가 고소인이 한국에 입국하도록 유인한 행위

고소인은 필리핀 다바오에서 왔으며, 4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던 고소인은 부모님을 도와 어린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 대학을 마치지 못한 채, 18세부터 쇼핑몰 핸드폰가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실제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소인 1이 운영하는 Y프로모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 Y프로모션은 필리핀에 무허가 기획사를 설립하고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필리핀 여성들을 대상으로 거짓 취업정보를 제공한업체로서, 피고소인 1, 2는 위와 같이 필리핀에 설립한 무허가 기획사를 통하여 필리핀 여성을 한국으로 유인한 뒤 미군 대상 클럽에 취업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던 것입니다.

고소인은 2009. 0. 0. 지인의 소개로 필리핀 현지에 있는 프로모션 매니저인 피고소인 1 (일명 Mr. Kim)을 만나 2년간 한국에서 가수로 일하며 월급 9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매니저는 비자 만들 시간이 축박하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무조건 서명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명이 끝난 후 “이제 한국에 가서 가수로 일하게 되면, 돈을 많을 벌게 된다. 한국에는 최저 월급 제도가 있어서, 계약서에 그렇게(910,000원) 명시한 것 일 뿐, 실제로는 250달러를 받게 될 것이며, 1년 계약이며, 중간에 그만 둘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09년 0월 0일 한국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이 되어서야 다음 날 출국하게 될 여성들을 모두 모아 “한국에 가는 모든 비용은 두 달 동안 월급에서 공세하고, 한국 클럽에서 일할 때 노래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손님

들에게 술을 접대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브리핑하였습니다.

2009년 0월 0일 한국으로 출국하는 날, 피고소인 1은 필리핀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에스코트 해 주었는데, 이는 피고소인 1이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 기획사가 필리핀에서 허가받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POEA(해외고용청)²⁸⁾의 서류를 갖추고 있지 못했고, 이에 따라 불법적인 경로로 필리핀에서 출국했던 것입니다.

2009년 0월 0일, 고소인이 한국에 도착하자, Y 프로모션 매니저인 피고소인 2가 마중 나와 있다가 고소인을 데리고 가면서 고소인의 계약서 사본을 가져갔습니다.

2)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피고소인 1, 2는 처음부터 취업을 미끼로 필리핀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켜 성매매 업소에 취직시키게 한 후 그 대가로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필리핀 현지에 무허가 기획사를 설립하고 필리핀 여성들에게 허위의 취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거짓 홍보를 하였던 점, 고소인에 대하여도 성매매와는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여 가수가 될 것이라고 속였고 이에 고소인 또한 한국에 입국하면 가수가 될 것이라고 믿었을 뿐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소인들만 믿고 자신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에 입국하여 그 생활을 전적으로 피고소인들에게 의지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8) POEA는 필리핀 해외고용청으로 필리핀 노동자(연예인 포함)는 필리핀 공항 출국심사를 통과할 때 POLCA(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가 인증한 외국 고용업체가 POEA의 허가받은 에이전시를 통해 요청받은 연예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자신이 POEA에 등록된 연예인임을 확인하는 OEC(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확인서는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의 비자 신청 서류에 포함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입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필리핀 현행 법상으로는 출국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소인 1, 2의 행위는 고소인에게 성매매와 무관한 직업에 취직시켜 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한국에 입국하게 한 후 자신들의 지배하에 놓이도록 유인한 행위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고소인을 유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나. 제1항의 나항과 관련하여

1) 피고소인들이 각각 고소인을 인계한 행위 (피고소인 1 → 2 → 3)

피고소인 1, 2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국내의 성매매 업소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고소인을 유인하여 한국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한 것입니다.

이에 2009. 0. 0. 위와 같이 고소인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자, 피고소인 1은 고소인의 계약서 사본을 빼앗은 후 인천공항에 마중 나와 있던 피고소인 2에게 고소인을 인계하였으며, 피고소인 2는 위와 같이 고소인을 인계받아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일대의 외국인 전용 클럽(6개 정도의 클럽으로, 실제로는 외국인 대상의 음란 행위 및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을 배회하며 클럽 업주들에게 고소인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9. 0. 0. 피고소인 2는 B클럽을 경영하는 사업인 피고소인 3에게 다시 고소인을 인계하였는데, 위 B클럽은 미군을 대상으로 키스, 포옹, Lapdance 등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군들에게 술을 팔고, 업소 종사 여성으로 하여금 클럽 손님들과 함께 외부에 나가 성매매를 하도록 암선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2) 소결

피고소인 1은 실제로는 고소인을 국내 성매매업소에 취직시킬 목적이었음에도 가수로 취업시켜준다며 고소인을 유인한 후 피고소인 2에게 고소인을 인계한 점, 피고소인 2는 이와 같은 정황을 모두 알면서 고소인을 인계받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음란 행위 및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에 고소인을 넘기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일대의 클럽을 배회하며 업주들에게 고소인을 소개한 점, 그러면 중 피고소인 2는 미군을 대상으로 음란 공연 및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피고소인 3 운영의 B클럽에 고소인을 인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 1은 피고소인 2에게, 피고소인 2는 피고소인 3에게 각각 고소인이 성을 팔게 하거나 음란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인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소인 1, 2, 3의 각 행위는 각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3호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제1항의 다향과 관련하여

1) 피고소인 3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강요한 행위
고소인은 위와 같이 2009. 0. 0.부터 피고소인 3이 운영하는 B클럽에
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필리핀에서 계약했던 내용과 달리 가수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들을 대상으로 키스, 포옹, Lapdance 등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군들에게 술을 파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Lapdance는 손님이 앉아 있으면 스킨십을 하며 무릎에 앉아 주는 선정적인 춤을 추는 것으로 온갖 저속한 이야기를 들으며 수치심이 들었지만 가슴속으로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손님들에게 술을 팔아 열흘 동안 400포인트(20,000원짜리 술 한 잔은 2점, 10,000원짜리 주스 한 잔은 1점, 1점은 2,000원으로 환산)를 채워야 했습니다. 할당된 포인트를 다 채우지 못하면 “무대에서 거의 나체로 섹시댄스를 춰야하는 다른 클럽으로 팔아버린다”며 사장이 옆에 있는 물건을 치며 강압적으로 말할 때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혈압이 올라 어깨 및 뒷목도 아팠으며 특히 머리가 아파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사먹어야 했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으며, 어쩔 수 없이 포인트를 채우기 위해 바파인(성매매)을 나가기도 했습니다(바파인 1회 30~35포인트).

고소인이 피고소인 3에게 한 달에 벌어준 매상은 평균 300만원 정도였지만 고소인에게 단 한 차례의 월급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쿼터(400점)를 채웠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금액(1 점당 2,000원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세때 지급받지 못했고, 지급받은 돈으로는 약한 옷 및 악세사리를 가져와 강제로 구입하게 했습니다.

지각을 하거나 체중이 늘면 1만원씩을 업주에게 벌금으로 지불해야 했고, 할당된 포인트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가게 문 앞에만 나가도 1만5천원에서 2만원의 벌금을 받아갔습니다. 바파인을 나갔다가 12시까지 귀가해야 하는 규율을 지키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늦을 경우 15분에 2만원, 1시간에 5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3은 여성들에게 술을 먹여도 취하지 않는 약물을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다이어트 약을 강제로 복용시켰으며, 매우 아파 응급실을 찾을 때도 병원비를 지불하거나 병원에 데려다주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업소에는 CCTV가 6개 있어서 클럽 입구와 내부를 감시하였습니다. 경찰 단속이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조사를 나올 경우, 피고소인 3은 여성들에게 일하는 시간, 일하는 형태, 월급, 쉬는 날, 바파인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육시켰고 덕분에 단속을 무사히 넘기곤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피고소인 3이 시키는 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피고소인 3이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내가 교도소에 가게 될 경우 너희들은 모두 돈도 받지 못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 소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 3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Lapdance 등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한 점, 정해진 포인트를 채우도록 하면서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결국 고소인으로 하여금 손님과 바파인이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할 수 밖

에 없도록 강요한 점, 성매매 후 업소에 돌아오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에 늦을 경우 벌금을 받는 등 일정한 구칙에 따라 손님과의 성매매 영업 및 그에 따른 수익을 관리였던 점, 업소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사전에 단속에 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로 하여금 바파인(성매매)에 대하여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미리 교육을 하는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소인 3은 B클럽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키스, 스킨십, Lapdance 등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소 차원에서 종업원의 성매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는 등 종업원과 손님들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소인 3의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법률의 규정

가. 제1항의 가항과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④ 「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 ①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 ①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 제287조 또는 제 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나. 제1항의 나항과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라. 가목 내지 나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18조 (별칙)

-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을 갑급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
- 다. 제1항의 다향과 관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별칙)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4. 기타 처벌 법규

가.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위반

위 법률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 1, 2는 처음부터 고소인을 성매매 행위 또는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필리핀 현지에 무허가 업체를 설립하여 허위 정보를 통하여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고 할 것으로, 이러한 피고소인 1, 2의 행위가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 위반

위 법률에서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상의 정의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제1호),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제2호).

그렇다면 피고소인 1, 2는 해외인 필리핀 현지에 무허가 업체를 설립하여 고소인을 근로자로서 모집,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인 피고소인 3의 업소에 종사하게 한 것이며, 앞서 살펴본 피고소인 3이 경영하는 클럽의 특성상 위업소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1, 2가 파견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인 고소인으로 하여

금 공중위생 및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것으로서 위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또한 함께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이 일로 인하여 고소인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처참함, 수치스러움, 자신과 세상에 대한 환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딸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홀로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소인에게 이와 같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경악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은, 고소인의 경제적 취약점을 빌미로, 위협하고, 특히 한국의 합법적 계약 관계를 통해, 고소인을 종속적인 관계로 관리해 왔다는 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외국인인 고소인을 철저히 자신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강요, 알선을 목적으로 약취했으며(피고소인 3), 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소의 모든 환경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유인, 매매한 것입니다.(피고소인 1,2)

이는 분명한 국제 인신매매이며,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노력과 기술을 통해, 본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시고, 관련 범죄자들이 다시는, 제 3세계 국가의 외국인 여성들의 경제적 취약점을 악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치벌을 적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자료

1. 중재1호증 고소인의 진술서
2. 중재2호증 성구매자 관련정보 리스트
(기타 수사과정에서 제출하겠습니다)

2010. 0. 0.

○○지방검찰청 ○○지청 귀중

■ 수사요청서 예시

수 사 요 청 서

수신 : *** 경찰서 형사 2팀 이** 순경 귀하

제목 : (피고소인) 참고인 로잘린 산티** (이하 로잘린) 진술 정정을 위한 재조사
요청에 관한 건

작성인 :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박*** 소장

제출인 : 로잘린

주 소 : 평택시 이하생략

연락처 : 031-611-*****

* 고소 사건 (기본) 내용

1. 고소인 : 리첼 (198*년 *월 **일),

레이 (198*년 *월 **일)

국적 : 필리핀

2. (피고소인) 참고인 : 로잘린

국적 : 필리핀

생년월일 : 19**년 *월 **일

비자종류 : E-6

입국일 : 2009년 1월 18일

안녕하십니까?

본 회는 국내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와 탈성 매매를 위하여 상담활동을 비롯해 의료지원, 법률지원, 쉼터제공, 긴급구조, 인신매매(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중 홍보사업과 관련법 제·개정 운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1. 본 회가 이와 같은 요청서를 내는 이유는 지난 2009년 1월 14일 경, 피고소인(성명불상, 미경)들이 제기한 참고인 로잘린의 진술 조사에 대하여, 재 조사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2월 5일, 피고소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클럽을 도망하여, 숨어 지내다가, 2월 25일, 간신히 본 시설에 지원 요청을 시도한 로잘린 본인의 제안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피고소인들이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참고인 로잘린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진술을 조작한 일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피고소인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또 다시 거짓으로 중인 또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시키지 않도록,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연예인들의 신변 보호 및 체류 자격 보장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소인들이 이번에 자행한, 참고인 진술 조작 행위는, 사건 중인으로써, 진실을 말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일 뿐 아니라,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애쓰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참고인(로잘린)의 진술서를 충분히 참고하시어, 다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처음 참고인을 추천했던 피고소인들과도 대질 조사를 진행하시어, 사건과 관련된 사실들을 최대한 명확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참고인 로잘린의 진술서 사본 1부, 진술서 번역본 1부

■ 탄원서(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용) 예시

탄 원 서

수신 : 법무부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제목 : 성매매 강요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보호소 안에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해제 조치 요구에 대한 건

제출인 :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장 박**

주 소 : 경기도 (이하 생략)

연락처 : 031-****-****

피해자 : 아일린 크** (Irelen C*****)

국적 : 필리핀

생년월일 : 19**년 9월 7일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시대에 따른 출입국관련 업무증가로 인한 격무에도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두레방은 1986년에 설립되어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일하는 성매매 피해여성들과 국제결혼한 여성들을 상담/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본회는 현재 경기도 제2청사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매매피해상담소(의정부),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평택)로 각각 신고되어 있습니다.

본회는 그 동안 기지촌 성산업에 유입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와 탈 성매매를 위하여 상담활동을 비롯해 의료지원, 법률지원, 쉼터제공, 긴급구조,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중 홍보사업과 관련법 제·개정 운동 등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국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적 구조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피해여성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결국, 올해 7월부터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을 여성가족부, 경기도, 평택시로부터 위탁받아 국내 성산업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전담하여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생략)

본회가 탄원서를 내는 이유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님께 피해자 아일린이 보호소 안에서나마 최선을 다해 수사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덧붙여, 본 사건의 고소인인 아일린 출입국의 보호 조치 아래 있기 때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아일린의 (자신의 열악한 처지와 여전 속에서도) 수사에 대한 의지있는 태도와 수사기관의 담당 형사 (**경찰서 형사 1팀, 문** 형사, 031-***-****)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모집, 운송, 인계, 인수 과정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정황 수사를 통해 인신매매의 모든 과정이, 낱낱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대한 수사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고소인이 보호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 속에서 사건의 기소 여부와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1. 고소인의 신변 문제이며, 2. 증인, 증거와 관련된 직, 간접적인 정보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여, 수사기관과의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고소인의 신변 문제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이 계속적으로, 고소인 아일린을 대상으로 면회를 신청하여,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신변의 안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번 수사가, 파견업체 및 프로모터 등이, 고소인인 아일린을 기망하여, 인신매매한 것이 사실인지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 때문인데, 벼짓이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접촉하여, 또 한번 어떤 강요와 위협을 할지 모르는데도 피해자 아일린은 출입국 사범이라는 이유로, 보호소에 갇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의 대면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2. 보호소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접촉하여, 설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호소하고 싶은 점은, 불법으로 취업을 시도하기 전, 1. 아일린 크**가 사업장을 이탈한 것은, 성매매 강요 등에 의한 것임으로, 매우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 업소 탈출 후, 체류 목적과 상이한 경제 활동을 위해, 2. 공장에 취직하고자 했던 의도 또한, 그 동안 지역과 업소를 옮겨다녔지만, 번번히 비정상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성착취와 성매매 강요당한 정황을 살펴볼 때, 아일린 크**가 “더 이상 E6 엔터테이너로서가 아닌, 보다 안전하고 정

상적인 노동자로 일하기 원해서” 행한 행위였음을 정상 짐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는, 그 동안, 대부분의 외국인 성매매, 인신매매 사건들이, 피해자들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브로커, 에이전시, 에이전트 등에 의한) 귀국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채, 묻혀지는 상황을 봐 왔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은,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들을 입막음하려 하거나, 강제로 출국시키는 행위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증인인,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멀리 떠나버리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된다고 믿고, 이 같은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정책과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출입국에서는, 이번 아일린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는, 출입국 사법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이 입은 인권 침해적 사례, 사건들을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성매매, 인신매매 범죄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아일린 크***의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해제해주셔서, 본 시설에서, 보호하고 지원하여, 범죄 연루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선처를 바랍니다.

참고로,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 아 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中

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 ①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 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에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붙임 : 고소장 1부, 수사지휘통지서 1부 끝.

■ 탄원서(검찰 제출용) 예시

탄 원 서

수신 : ***지방검찰청 이** 검사 귀하

제목 : 성매매 강요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보호소 안에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해제 조치 요구에 대한 건

제출인 :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장 박**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이하생략

연락처 : 031-***-***

사건번호: 의정부지방검찰청 2010 형제 2****호

피해자 : 아일린 크** (Irene C***)

국 적 : 필리핀

생년월일 : 19**년 9월 7일

안녕하십니까?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지방검찰청 이** 검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두레방은 1986년에 설립되어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일하는 성매매 피해여성들과 국제결혼한 여성들을 상담/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본회는 현재 경기도 제2청사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매매피해상담소(의정부),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평택)로 각각 신고되어 있습니다.

본회는 그동안 기지촌 성산업에 유입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와 탈 성매매를 위하여 상담활동을 비롯해 의료지원, 법률지원, 쉼터제공, 긴급구조,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중 홍보사업과 관련법 제·개정 운동 등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국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적 구조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피해여성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결국, 올해 7월부터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을 여성가족부, 경기도, 평택시로부터 위탁받아 국내 성산업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전담하여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생략)

본 회가 탄원서를 내는 이유는 사건 담당 검사님께 피해자 아일린이 보호소 안에서나마 죄선을 다해 수사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덧붙여, 본 사건의 고소인인 아일린이 출입국의 보호 조치 아래 있기 때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아일린의 (자신의 열악한 처지와 여전 속에서도) 수사에 대한 의지있는 태도와 수사기관의 담당 형사 (**경찰서 형사 1팀, 문** 형사, 031-***-***-**)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모집, 운송, 인계, 인수 과정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정황 수사를 통해 인신매매의 모든 과정이, 낱낱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대한 수사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고소인이 보호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 속에서 사건의 기소 여부와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1. 고소인의 신변 문제이며, 2. 증인, 증거와 관련된 직, 간접적인 정보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여, 수사기관과의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고소인의 신변 문제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다음이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이 계속적으로, 고소인 아일린을 대상으로 면회를 신청하여,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신변의 안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번 수사가, 파견업체 및 프로모토 등이, 고소인인 아일린을 기망하여, 인신매매한 것이 사실인지를 밝히는 것이라는 점 때문인데, 벼刹이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접촉하여, 또 한번 어떤 강요와 위협을 할지 모르는데도, 피해자 아일린은, 출입국 사범이라는 이유로, 보호소에 갇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의 대면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2. 보호소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접촉하여, 설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호소하고 싶은 점은, 불법으로 취업을 시도하기 전, 1. 아일린 크***가 사업장을 이탈한 것은, 성매매 강요 등에 의한 것임으로, 매우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 업소 탈출 후, 체류 목적과 상이한 경제 활동을 위해, 2. 공장에 취직하고자 했던 의도 또한, 그 동안 지역과 업소를 옮겨다녔지만, 번번히 비정상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성착취와 성매매 강요당한 정황을 살펴볼 때,

아일린 크***가 “더 이상 E6 엔터테이너로서가 아닌, 보다 안전하고 정상적인 노동자로 일하기 원해서” 행한 행위였음을 정상 침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는, 그 동안, 대부분의 외국인 성매매, 인신매매 사건들이, 피해자들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업주, 브로커, 에이전시, 에이전트 등에 의한) 귀국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채, 묻혀지는 상황을 봐 왔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은,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들을 입막음하려 하거나, 강제로 출국시키는 행위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증인인,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떠나버리면, 모든 것이다 정리된다고 믿고, 이 같은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정책과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임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출입국과 수사 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바, 출입국 소장님과 검사님께 탄원서를 동시에 제출될 것입니다.

본 회에서는, 이번 아일린 크***의 사례를 통해 출입국 소장님께, 출입국 사범이라 할지라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 등의 중대한 인권 침해적 사건들이 접수되고, 신고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탄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사건 고소인인 아일린 이 보호소 안에서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에게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연락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증거 부족, 기소 여부에 대한 불확실, 특히 무엇보다도 보호소 안에서 견뎌야 하는 부담감의

이유로, 수사요청 및 형사 고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는 여성들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호소 안에서나마, 중대한 범죄 사건들이 접수될 수 있는 출입국 정책과 보호소 내 시스템 개선을 위해, 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 우선 방침은, 특히 성매매, 인신매매 범죄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아일란 크**의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해제해주세요, 본 시설에서, 보호하고 지원하여, 범죄 연루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선처를 바랍니다.

참고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치벌에 관한 법률 중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 야 래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치벌에 관한 법률 제2장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 中

제11조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 ① 외국인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 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 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

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에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붙임 : 고소장 1부, 수사지휘통지서 1부 끝.

■ 의견서(검찰 제출용) 예시

의 견 서

사 건 번 호 2010년 형제0000호

피 의 자 김00 등

고 소 인 M00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님과 수사관님께서 사회정의 구현,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기울여 주신 깊은 관심과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M00의 상담원 이00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다 음

1. 000 상담소가 하는 일 (상담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아래는 예시)

000 상담소는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 운영하는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하여 상담을 비롯해 법률지원, 의료지원, 쉼터연계, 긴급구조,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 영리 목적 약취 유인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고소인의 사건은 현재 성매매알선에 집중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소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둔 다음 영리 또는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인신매매하였다는 점입니다.

가. 국내법적·국제법적 근거

1) 국내법적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을 파는 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또는 위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에서는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와 이와 같이 약취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약취·유인” 및 “위계·위력”的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취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데 대하여,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며, 유혹이란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고 반드시 기망의 요소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²⁹⁾

위계 및 위력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위계란 행위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흔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 이든 무형적이든 가리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³⁰⁾

29) 형법각론 이재상 저 2000 중판 129쪽 참조. 1976. 9. 14. 76도2072, 1996. 2. 27. 95도 2980 참조

“..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피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자비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김연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하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30)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판결, 2005. 3. 24. 선고 2003도5004판결 참조

2) 국제법적 근거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국제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조약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³¹⁾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이하 인신매매방지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제1조 현 협약의 체약국은 타인의 육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래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합의한다.

1. 성매매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2.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을 성매매 하도록 착취하는 자³²⁾

– UN 인신매매방지 협약 의정서(이하 의정서: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2000)

제3조 (a)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무력사용, 위협 또는 각종 강압행위,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악용 또는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행위 등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전,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b) 앞서 나열한 수단이 사용된 경우 고의적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 등의 동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³³⁾

31)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성매매를 미화하는 貢春이라는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용어로 통일합니다.

32) Article 1

The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agree to punish any person who, to gratify the passions of another:

(1) Procures, entices or leads away, for purposes of prostitution, another person, even with the consent of that person'

(2) Exploits the prostitution of another person, even with the consent of that person.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6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³⁴⁾

한편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9. 11. 20. 제43회차 회기에서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권고하였습니다.

“23.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이 성매매나 성적 착취뿐만 아니라 모든 영리 목적을 위한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여성과 아동이.... 계속적으로 이 국가 안에서 성적 착취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낮은 기소와 유죄선고의 수를 특히 우려한다(제10조).”

위 협약 및 의정서에 의하면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하여 피해여성의 합의나 동의 유무를 묻지 않는 점, 인신매매의 행위 태양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력사용, 위협, 강압, 사기, 기만 등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한 모든 유형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등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 인신매매

33) Article 3

(a) "Trafficking in persons" shall mean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r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u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b) The consent of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to the intended exploitation set forth in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shall be irrelevant where any of the means set forth in subparagraph (a) have been used;

34) Article 6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suppress all forms of traffic in women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of women.

의 불법성이 그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가 “그 자체”로서 여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크고 피해여성에 대한 성매매의 강요, 폭행 및 성폭력 등 더 큰 2차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 주안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인신매매를 전체의 과정을 하나로 보아 차별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는 관련 국내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관철되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제법적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차별법규상 “위계, 위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인신매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관계의 해석 및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명시적, 직접적인 위계, 위력의 존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이용한 묵시적, 간접적인 기망이나 압력의 존재 여부가 폭넓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묘한 방법으로 취업을 미끼로 여성을 유인한 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가 자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의 유인단계에서 여성에게 알려진 직업의 종류가 성매매 분야가 아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여성의 예상과는 달리 피해여성의 인계 후 종사하게 된 직종이 성매매 업소였다면 그러한 위계, 위력의 존재가 일옹 추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나. 피고소인들의 위계 및 약취 유인

1) 고소인 및 피고소인들의 지위

피해자는 필리핀 현지나 일본에서 밴드의 보컬가수로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수로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6남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소인 4는 필리핀 현지에 J모 Agency라는 프로모션 업체³⁵⁾ 그리고 한국에 P모 Entertainment를 운영하는 사이며 한 때 고소장에 기재된 S 클럽의 사장이었으나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클럽을 현재 클럽 사장인 피고소인 2에게 이전하였

³⁵⁾ 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Philippine Overseas Labor Office)는 자국민이 해외 시장의 노동자로 진출함에 있어 고소인과 같은 인신매매 적 범인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체적인 인증 절차를 두고 있는데 제네마이 어 아이전시는 이곳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고 합니다. 피고소인 3은 한국의 P모 엔터테인먼트의 운영자 내지 실무자입니다.

2) 가수로 취업하게 해준다는 기망

대체로 한국 프로모터들은 필리핀 현지인을 리크루터로 고용하여 포스터 또는 지인을 통하여 고소인과 같은 피해자들을 모집합니다. 피고소인 4도 자니라는 필리핀인 여성 리크루터를 두어 그녀를 통하여 필리핀 이곳 저곳에서 여성들을 모집하였습니다(고소인 이외에도 귀 청의 사건번호 2010형제 0000호의 고소인 아00도 피고소인 4가 운영하는 J모 에이전시의 리쿠르터 자니를 통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2009년 2월 말 경 필리핀 Cavite 자신의 고향에서 한국에서 가수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거기 에 적힌 자니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니가 피해자에게 처음 오디션 장소라고 일러주었던 곳은 필리핀의 유명한 스타(Kuta Garms, Coney Peyes 등)들을 배출한 Gatchalian Agency³⁶⁾(필리핀 Pasay Paranaque City, Manila)라는 공신력이 있는 곳이었고 실제 그곳에서 자니와 한국인 프로모터로부터 간략한 오디션을 보아 합격하기도 하였기 때 문에 피해자는 자신에게 앞으로 닉칠 상황에 관하여 의심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니³⁷⁾는 오디션 바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는 “서류(한국 입국 준비를 위한 서류)도 빼르고³⁸⁾ 봉급도 더 많이주는 기획사가 있으니 그 기획사로 옮길거다”라고 말하여 교묘하게 피해자를 피고소인 4가 운영하는 J모 Agency로 넘어오게 하였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했던 피해자로서는 특별한 의심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E-6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VTR(Video Test Recording, 노래 실력 평가를 위한 영상물)³⁹⁾을 거쳐야 하는데 피해자는 2009년 8월 경

36) 한국으로 치자면 SM Entertainment 와 같은 수준의 곳입니다.

37) 피고소인 4족

38) 보통 여권발급, 한국 내부의 E-6 비자 발급을 위한 준비 절차를 위하여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39) 이 영상물을 한국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보내어 통과가 되어야 E-6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 테스트 자리에는 J모 Agency의 직원들과 피고소인 4가 있었으며 피고소인 4는 자신을 스스로 한국에서 온 프로모터이며 자신이 직접 재능있는 사람들을 꼬박해간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촬영 당일 피해자는 Angela Bofil의 Break it to me gently 등 2곡을 불렀으며 순전히 가수로서의 Video 테스트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할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꿈에 부풀었습니다.

3) 한국어 계약서와 위계

피고소인 4측인 J모 Agency는 2009년 9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회사를 방문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Agency 담당자 중 하나가 종이를 내밀며 대사관에 가서 대답하기 위한 것들을 외우라고 주지시켰습니다. 거기에는 기획사 이름이 J모 에이전시라는 것, 월급이 92만원, 직업이 가수라는 사실, 필리핀에서 가수로 활동한 적이 있다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사관에 가서 답할 것들을 주지시킨 다음 피고소인 4측의 직원이 계약서라고 내밀었습니다. 계약서는 여러 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모두 한국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계약서 뭉치 중 단 한 장이 영어(그러나 피해자는 영어를 잘 못함)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각서로서 대충 피해자가 2년간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하며 계약을 위반하면 큰 벌금이 나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각서의 내용에 동의할 것을 전제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였습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곤궁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한 채 각서와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적어도 사본이라도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4측은 각서 및 계약서 뭉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모두 가져가버려 그 이후라도 피해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따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4) 그렇게 피해자는 2009년 9월 경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여권이나 관련 서류는 모두 J모 에이전시의 직원인 라이에게 있고 출국 당일도 라이와 자니의 에스코트(필리핀 출국심사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사전에 출국심사대 직원과 모종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추정되며, 에스코트를 담당한 에이전시 직원들은 여러 출국 심사대 중 하나의 심사대만을 지정하며 그곳에서만 출국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에스코트라고 함) 하에 피해자가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피고소인 3이 공항에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소인 2가 운영하는 클럽으로 데려다 인도하였습니다.

5) 계약 내용과 상이한 클럽 생활 – 접대 및 성매매 강요

그러나 피해자가 한국에서 와서 한 일은 애초 피해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주스를 많이 팔기 위해 거의 브라와 팬티만 입고 손님 앞에서 봉 춤, 랩댄스 등의 선정적인 춤을 추어야 했고 남성들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견뎌야 했으며, 쿼터를 채우기 위해 바파인(2차)을 나가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무대에서 가수로서 노래를 부른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소인들로부터 완전히 속았던 것입니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소인 3, 4는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가수를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 유혹하여 그녀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일으킨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어 한국의 성매매알선영업 클럽으로 피해자를 인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소인 2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그들로부터 피해자를 인계 받은 자입니다. 이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정의 규정의 “성을 파는 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또는 위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

를 인계받는 행위”에 해당하며 적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영리목적의 약취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피고소인 1, 2, 3, 4는 모두 사업상 친분이 있는 관계로서 피고소인 3, 4는 피고소인 1, 2의 클럽에 내왕하면서 클럽의 실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3. 성매매 알선 강요 부분 – 바파인과 성매매 강요의 상관관계

가. S 클럽

1) 피고소인 2가 운영하는 S의 큐터는 일주일당 70점이었습니다. 큐터란 일주일에 피해자가 팔아야 하는 매상액을 의미합니다. 주스 1잔에 10,000 원이고 10,000원 당 1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여성들은 월요일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에 따라(1 포인트당 2,000원)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⁴⁰⁾ 반대로 70점을 채우지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자유시간(3시간)을 가질 수 없으며 피고소인 2는 큐터를 채우지 못하면 멀리 다른 클럽(여기보다 상황이 열악한 옥포 등)으로 보내버리겠다고 육박을 질러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S 클럽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은 모두 14명 정도였고 주중에는 손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큐터를 채우기는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또한 주말마다 피고소인 2는 여성들을 불러모아놓고 큐터를 채우지 못한 여성들을 지목하여 위와 같이 육박을 지르며 큐터를 채우기를 강요합니다.

이 큐터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바파인이며 사실상 큐터제도를 통해서 2차 성매매가 강요되고 있습니다. 바파인(2차)을 다녀오면 성구매남으로부터 25만원 내지 3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아니면 위 금원 상당의 맥주를 마시는 손님에게는 2차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를 마마⁴¹⁾라는 리더를 통하여 클럽 사장인 피고소인 2에게 전달하면 피고소인 2가 25~30 포인

40) 이는 프로모션으로부터 받을 월급과 별개입니다.

41) 고소인은 현재 마마의 예전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트를 올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의 대가인 화대 관리는 여성들의 리더인 마마를 통하여 전액 사장인 피고소인 2가 관리합니다. 한편 피고소인 2와 같은 클럽 사장들은 혹시 여성들이 자기 몰래 바파인을 하고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까봐 끊임없이 여성들을 의심하고 감시하는데 그런 의심을 사는 경우에는 별금과 함께 자유시간을 뺏기게 되며 피해자도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 2는 피해자와 같은 여성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숙소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두고 숙소 출입구 방에는 남자 DJ를 머물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도망가거나 몰래 2차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 하였습니다.

2) T 클럽으로 보내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2010. 1. 경 2차 성매매로 인하여 결국 질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통증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피고소인 2에게 병원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고 화가 나고 억울한 피해자는 피고소인 2에게 필리핀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리더인 마마가 피해자에게 다가 와서는 “미안하다고 해라. 안하면 다른 데로 보낼거야.”라고 이야기 해주었으나 피해자는 사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 쯤 지나 어느 날 갑자기 피고소인은 피해자를 T 클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한국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것이 낯선 외국인으로 가족이나 친지가 전혀 없는 한국에 혼자 왔습니다. 그런 피해자에게 환경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큰 공포를 안겨줍니다. 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T 클럽은 S 클럽보다 장사가 되지 않고 쇼가 없이 순전히 손님 접대만 하는 곳이었으며 퀴터도 더 높은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나. T 클럽과 탈출

피고소인 1이 운영하는 T 클럽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퀴터를 통한 성매매 알선 강요가 있었습니다. 쇼 타임이 있는 S 클럽과 달리 T 클럽은 순전히 손님 만을 접대하여 주스를 팔거나 바파인을 해서 퀴터를 채워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T 클럽의 퀴터는 80 포인트로 S 클럽보다 10 포인트나 더 높았던 반면 S 클럽보다 손님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퀴터를 채우기는 더욱더 힘들었

습니다.

피고소인 1 역시 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여성에게 사실상 바파인을 강요했습니다. 남성 손님의 온갖 모욕적인 성희롱, 성추행을 견뎌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스를 한잔이라도 더 팔기 위해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무리한 성적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피해자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게다가 쿼터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나마 10일에 한번 쉴 수 있는 자유시간도 가질 수 없었으며, 피고소인 1 몰래 바파인을 나갈까봐 계속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괴롭혔습니다⁴²⁾.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을 견딜 수 없어 2010. 4.경 T 클럽을 도망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피고소인 1은 고소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망쳤다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소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클럽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될 위험을 안고 도망을 칠 까닭이 없습니다.

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공연법 위반의 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에서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3,4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파견사업주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와 같은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므로 이 규정으로도 처벌되어야 합니다.

한편 공연법 제40조 제2호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공연추천을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피고소인 2, 3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연⁴³⁾을 하게 해줄 것처럼 속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한국에 입국시켰으나 이는 모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에 해당하-

42) 이 곳 속소에도 OCTV가 설치 되어 있음.

43) 공연법 제2조 제1호 "공연"이라 함은 음악 무용 연극 연계 국악 곡에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위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된다.

므로 이 규정으로도 처벌되어야 합니다.

5. 클럽 탐문수사의 부적절성 및 구속 수사·압수수색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국제법적, 국내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범죄로서 중형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가. 그런데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과정 자체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과 같은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한국 클럽에서 도망쳐 나와 쉼터에서 머물고 있는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클럽에 관하여 경찰 탐문 수사가 있기 전날 업주들은 사전에 경찰의 예상질문 및 답변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여성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경찰의 질문에 대해 그 리스트대로 답할 것을 강요한다고 합니다. 그 답변 리스트의 내용이란 “매달 92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았고, 바파인(성매매)는 없으며, 음주가 허락되지 않으며, 매일 밤 일정 시간에 자신의 차례가 되면 노래를 부르고, 쿼터는 없으며, 일주일에 한번 휴일을 갖는다”는 거짓 내용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업주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여성들의 프로모터(P모 앤더 테인먼트나 J모 애이전시)에게 연락하여 경남 옥포의 가장 나쁜 클럽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업주가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클럽 탐문 조사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다른 방식(예: 기습수사, 합정수사 등)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피고소인들의 범죄는 그 형이 중하여 증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증거를 인멸해 버릴 가능성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인 고소인에 대한 보복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고소인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들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또는 영리목적의 약취유인 등 인권에 반하는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0100 진술서 사본 1통

2010. 0. 00.

상담원 000 (인)

000 상담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000-0

연락처 02 - 000 - 0000

○○지방검찰청 000호 김00 검사실 귀중

■ 항고장 예시

항 고 장

사 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등

[**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 〇〇〇〇〇호]

항고인(고소인)

리디아 외 1

피의자(피고소인)

김○○ 외 2

2010. 7. .

항고인(고소인) 리디아 외 1

〇〇고등검찰청 귀중

항고장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 16042호]

항고인(고소인) 1. 리디아(영문명 기재)

(현재 거주지 기재)

2. 메이(영문명 기재)

(현재 거주지 기재)

피의자(피고소인) 1. 김○○

2. 장○○

3. 조○○

위 피의자들에 대한 **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 00000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이○○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고소인들은 이에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들은 2010. 7. ○자로 불기소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항고 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10. 7. .

항고인(고소인) 리디아 외 1

○○고등검찰청 귀중

■ 재정신청서 예시

재 정 신 청 서

신청인 나르다
피의자 윤○○ 외 4

**고등법원 귀중

재정신청서

신 청 인 나르다 (영문명 기재)
(현재 주소지 기재)

피 의 자 1. 윤○○
(주소)
2. 김○○
(주소)
3. 성명불상 (일명 마마상)
4. 원○○
(주소)
5. 톰
(주소)

피의자들에 대한 ○○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 ○○○○○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 박○○의 2010. ○. ○.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에 대하여 신청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고등검찰청 2010 고불항 제○○○○호)를 거친 후 이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합니다(신청인은 2010. ○. ○.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 청 취 지

피의자들에 대한 ○○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 ○○○○○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 제기를 결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불기소결정의 요지

검사는, ① 피의자 윤○○, 김○○, 성명불상자(일명 마마상), 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강요등)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고소인과 함께 일한 세 명의 필리핀 종업원들의 진술이 피의자들의 변소에 부합하며, 고소인이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엔젤클럽과 드라곤클럽을 오가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인신매매 또는 감금을 당하는 처지였다면 성매매를 나갈 때 또는 업소를 옮길 때 충분히 도망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② 피의자 윤○○, 김○○, 성명불상자(일명 마마상)의 엔젤클럽 종업원이었던 로즈에 대한 감금 혐의에 대하여, 『위 세 필리핀 종업원들의 진술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③ 피의자 김○○, 성명불상자(일명 마마상)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의 점)위반 및 피의자 톰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 각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이하에서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강요등)위반 및 감금의 점을 중심으로 각 불기소 결정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2.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강요등)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나). (생략)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한편, UN의 주도하에 2000년에 체결된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al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 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에 있어서 정의조항에서 설시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착취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무의미(무관)하다(The consent of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to the intended exploitation set forth in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shall be irrelevant where any of the means set forth in subparagraph (a) have been used)”라고 규정하여, 인신매매

에서 정의된 강제적 또는 기망적 수단이 사용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인신매매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불기소결정의 위법 · 부당성

(1) 전항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인신매매’란, 외국인 여성이 국내로 입국하여 고용된 장소(이 사건의 경우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인 ‘엔젤클럽’)로 유입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그 목적 · 수단 · 행위의 불법성에 관한 것으로서, 차취 목적으로 인계된 이후(유입된 이후)의 상황과는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신청인이 필리핀에서 국내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인 엔젤클럽에 유입되기까지의 모집, 인계, 인수 과정이 인신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위 클럽에서 좀더 일찍 탈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매우 빈약하고 또한 부당한 근거를 들어 위 조항의 해당성을 가볍게 배척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 ‘위계’에 의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가) 신청인 나르다는 필리핀 A지역에 거주하면서 알라딘이라는 밴드그룹의 리드보컬로 활동하면서 가수였습니다. 알라딘은 A지역에서 활동하는 밴드그룹으로 각종 행사에서 공연을 해 왔습니다. 신청인은 밴드활동을 하던 중 필리핀 현지 기획사인 A기획사의 매니저에게서 ‘여성보컬을 모집하는데 오디션에 합격하면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오디션에 참여하여 합격하였고, 가수로서 우리나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받아 필리핀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예술홍행(E-6)비자를 발급받은 뒤 2009. 3. 7.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김해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의자 김○○(이 사건 엔젤클럽의 매니저)의 인도에 따라 함께 차를 타고 경남 거제시

에 있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엔젤클럽의 여성종업원 숙소로 오게 되었고, 그 이후 2009. 8. 15.경 위 클럽을 탈출할 때까지 가수로서 무대에서 공연을 할 기회는 전혀 제공받지 못한 채 도착 직후부터 성매매를 비롯하여 유흥 점객원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나) 신청인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 서명한 공연계약서(Performance contract)에는 「기획사 (주)천지가 지정하는 공연업소의 지휘 감독하에 매일 5회의 공연을 하며 매회 공연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월요일에서 일요일 중 하루는 휴식을 한다, (주)천지는 신청인에게 공연의 대가로 월 91만원을 지불한다.」는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가수로서 현지 기획사 오디션에 참여하여 합격하였고, 신청인이 공연하는 영상도 영등위에 제출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엔젤클럽에 오기까지 누구로부터도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 다른 어떠한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특히 위 클럽에서 이른바 점객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법상 금지된 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신청인은 엔젤클럽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한 채 가수로 공연을 할 곳으로만 알고 기획사에 의하여 위 클럽으로 보내졌습니다. 즉, 신청인이 엔젤클럽으로 오게 된 것은 신청인의 선택이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은 클럽의 실상이나 클럽에서 자신이 실제로 하게 될 일에 대한 기초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라) 기획사와 클럽간의 긴밀한 연계구조

필리핀 현지 기획사, 한국의 기획사이자 파견근로업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주)천지(이하 「천지기획사」라고 합니다),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인 엔젤클럽은 매우 긴밀하게 사업적 연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천지기획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의자 윤○○이 다름 아닌 엔젤클럽의 실질적 업주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분명히 확인됩니다(이는 수사과정에서 윤○○ 스스로가 인정한 사실

입니다. 경찰 작성의 피의자 윤○○에 대한 신문조서 참조).

또한 천지기획사 직원인 피의자 윤○○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 윤○○은 스스로 필리핀 현지로 가서 직접 여성들을 선발하고, 현지 기획사인 A기획사가 윤○○이 운영하는 천지기획사로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면, 천지기획사가 역시 윤○○이 운영하고 있는 엔젤클럽에서 당해 여성이 공연하도록 영등위로 부터 추천을 받아 여성을 데려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필리핀 현지 기획사, 한국의 기획사, 한국의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는 단일한 목적하에 매우 긴밀한 조직적 연계망을 통하여,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필리핀 여성을 한국의 유흥업소로 유입시켜 성산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윤○○는 수사과정에서 여성들의 입국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신청인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천지기획사와 엔젤클럽은 '성매매를 포함한 성적 서비스 업무에 종사시킬 여성을 필리핀으로부터 데려온다'는 단일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조직체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인신매매 해당성 – '위계'에 의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이 사건은, 필리핀 여성이 현지 및 한국 기획사,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의 조직적 연계와 기망에 의하여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현지 기획사의 오디션에 참여하여 합격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예술홍행비자(E-6)를 받아 입국하였다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의 접객원으로 불법 고용되어 당초 약정하였던 공연법상 '공연'과는 전혀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강요받고 더 나아가 업소의 고객에게 성매매를 포함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매우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 간 수천 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신청인과 같이 가수의 꿈을 안고 신청인과 유사한 경로를 거쳐 한국에 들어 왔다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획사와 연계된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로 유입되어 성적 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과거 기지촌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여러 인권침해 상황과 인신매매, 성매매를 비롯한 구조적 범죄가 현재 이들 여성들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간 기지촌 등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국인 상대 성산업 상권이 최근 몇 년간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수입’을 통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국제결혼이주실태와 함께 최근 10년간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인권 침해 형태로서 많은 비난과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구조에 의한 자국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4년부터 한국정부에 5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의 전문적인 공연이 아닌 경우 필리핀 여성에 대한 E-6 비자발급을 제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기도 합니다(외국인 연예인 유입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국제이주기구 IOM, 『2006 외국인 연예인 도입 실태조사 및 정책비교연구』 참조).

위와 같이 신청인이 한국행을 결심한 동기, 신청인의 원래 직업, 계약서의 내용, 신청인에게 제공된 거짓된 정보 및 실제 정보의 은닉, 신청인의 의사나 선택권의 부재, 입국과정과 절차,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로 인계된 경위와 과정, 현지 및 한국 기획사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간의 긴밀한 연계구조와 이들의 공통된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위계’에 의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연 달리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더 전형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분명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

적인 수사와 기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탈출 여부를 주된 근거로 삼은 불기소결정의 문제점

검사는 '신청인이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엔젤클럽과 드라곤클럽을 오가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인신매매 또는 감금을 당하는 처지였다면 성매매를 나갈 때 또는 업소를 옮길 때 충분히 도망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불기소결정서 Ⅳ. 1항 말미), 인신매매를 당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사는 신청인이 사전에 도망갈 여건이 충분히 되었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것을 인신매매 해당성을 배척하는 주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2. 나. (1)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신매매는 신청인이 클럽으로 유입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에 관한 것으로 위와 같이 기망에 의하여 신청인이 필리핀에서 한국의 클럽까지 오게 된 이상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신청인이 탈출했는지 또는 왜 좀더 일찍 탈출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인신매매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검사가 신청인의 도망과 관련된 사정을 불기소결정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신청인이 좀더 일찍 탈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본인이 원해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리핀에서 원래 직업이 가수였으며 필리핀 기획사에서 정식 오디션을 본 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을 거쳐 예술홍행(E-6)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같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곧바로 차에 태워져 외국인전용 유홍업소로 가게 된 피해자들이(이들은 공항과 클럽 외에는 다른 지역

의 한국 땅을 거의 밟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도 지리를 알기 어려운 한반도 남단의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클럽에서 임격한 관리체계와 심리적 억압 상태(엔젤클럽의 관리와 억압상태에 관해서는 다음 항에서 상술합니다)하에 있으면서 여권이나 돈도 없는 상태로 탈출을 감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신청인이 중간에 일하는 클럽을 끓긴 것도 신청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거제시 옥포동과 그곳에 있는 업소들은, 한반도 최남단의 외진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조선업 지역라는 산업적 특성-그곳 업소들의 억압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인하여, 신청인과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외국연예인(예술홍행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여성)들 사이에서 기지총보다 더 열악하고 견디기 어려운 환경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여성들에게는 ‘거제 옥포동의 ○○ 업소로 끓겨진다’는 것만으로도 큰 두려움이 되고 업주의 ‘거제로 끓긴다’는 말만으로도 여성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로즈는 다행히 지인과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클럽을 탈출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이 실제로 탈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일찍 탈출하지 못한 것을 불기소 이유로 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후적, 제3자적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보아 잠시 탈출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기회를 더 일찍 잡지 못했다고 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들의 생생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고, 인신매매 내지 성매매에 동의한 피해자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검사가 세시한 위 이유는 결국 현재 신청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실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상황적·종합적 이해가 전적으로 결여된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진 피해자들에 대한 ‘손쉬운’ 의심과 무관심이 한국사회의 인권침해 실태를 방치하고 범죄행위를 용이화, 거대화하는

주된 매커니즘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둘러싼 인신매매적 구조를 규명하여 이와 같이 조직화된 범죄를 수사, 처벌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불기소결정과 같이 신청인이 필리핀에서 엔젤클럽에 오기까지의 인신매매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 이후 '탈출을 좀더 미리 안 한 것으로 보아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가볍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불기소결정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5) 세 명 종업원 진술의 문제점

검사는 신청인과 함께 일했던 A, B, C의 진술이 피의자들의 변소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신매매 및 감금의 접에 대한 불기소결정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불기소결정서 Ⅳ. 1항).

피의자 윤○○는 경찰 조사시 “제가 연락을 하여 저의 클럽에 종업원으로 종사를 하였던 필리핀 여성들과 연락을 취하여,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경찰의 피의자 윤○○에 대한 신문조서 마지막 장). 위 세 명의 종업원은 바로 클럽업주인 피의자 윤○○의 요청과 지시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또다른 피해자들로 보입니다. 클럽 내에서 종업원들이 치해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위 종업원들은 업주인 피의자 윤○○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종업원들의 진술은 업주의 진술과 부합하고 업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업주가 수사기관에 종업원들의 진술 협조를 자정한 후 직접 종업원들에게 그러한 진술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종업원들에게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최근 동종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검찰장에서는 종업원의 초기 진술이 업주에 의하여 왜곡되었음이 밝혀지고 그 종업원이 신변이 보장되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재기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위 세 참고인의 진술은 피의자 윤○○의 요청과 지시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들이 안심하고 진술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감금의 점에 대하여

가. 형법상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등).

나. 신청인과 동료 로즈가 이 사건 엔젤클럽에서 접객원으로서의 생활을 강요 받으며 감금되어 있었던 정황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의 진술

신청인은 『손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 5만 원, 울거나 술에 취해도 벌금 5만 원이 책정된다. 마마상이 지정해준 미용실에 가야 하고 미용실 비용은 월급에서 차감된다. 성매매를 하기 싫어 울면서 몇 번을 거절 하였으나 마마상과 클럽매니저가 ‘그러면 이곳보다 더 나쁜 클럽으로 보낸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였다. 마마상이 여권을 뺏어 가지고 있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여도 여권도 없고 돈도 없어 돌아가지 못했다. 매니저 남자가 여성 종업원 숙소 1층에서 항상 생활하면서 감시하여 몰래 외부로 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외출을 할 때에는 마마상의 허락을 받아 오랫동안 일을 한 여성과 함께 외출을 할 수 있었다. 한번 도망을 시도하였으나 1층의 남자 매니저가 잠이 들지 않아 실패한 적이 있다. 2009. 8. 15. 경 매니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도망쳐서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인

***에서 일하고 있는 알고 있던 통역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탈출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경찰 작성의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서 참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은 쉽게 배척되어서는 아니되며, 만약 신청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보다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톰의 진술

실제 신청인과 성매매를 한 노르웨이 국적 남성인 톰은 성매수행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종종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그날은 신청인과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입소에 술값과는 별도로 30만 원을 지불하고 신청인을 데리고 나의 집으로 왔다. 신청인이 나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숙소에서 외출을 금지하여, 낮동안 외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의 집에 왔을 때 신청인이 전화를 하게 해달라고 하여 인터넷으로 필리핀 가족과 통화하게 해주었다. 엔젤 클럽 여종업원들이 정해진 룰을 어기면 그에 따른 벌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즉, 클럽의 벌금제도와 외출금지, 성매매 영업은 클럽을 종종 이용하는 남성들도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며, 신청인이 톰의 집에 왔을 때 가족과 통화하게 도와달라고 한 사정을 보더라도, 신청인과 동료 여성들이 평소 엄격한 감시, 관리 체계 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로즈의 진술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엔젤클럽에서 근무한 로즈의 진술에 의하면,『자신은 가수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실제 공연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탈출하기 전 클럽에 있었던 일주일간 외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외출을 하려면 마마상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마마상이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도망갈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샴푸가 떨어져 구입을 위해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마마상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도망을 하여도 지리도 전혀 모르고, 돈도 없었으며, 그만두고 싶었으나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른 클럽으로 또 보낸다고 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2009. 11. 15. 외국인 남성 한명이 자신과 동료 ***과 성매매를 하려고 업소에 ‘바파인[Bar Fine, ‘fine(별금, 별금을 과하다)’의 원뜻을 고려하여 풀이하면, ‘업소의 손님이 업소에 고용된 댁서·집객원·종업원 등을 업소 밖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데리고 나갈 경우 업주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별금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업주는 손님의 요청대로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손님을 따라 업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그로 인한 손실을 손님에게 별금으로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파인’은 업소의 영업시간 내 업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2차(성매매를 포함하는 하는 2차)’ 또는 그 ‘대금’을 뜻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부대 근처의 클럽은 성매매업소가 아니라는 뜻으로 ‘NO BARFINE’이라고 표시하는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통상 바파인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만 원 내지 30만 원, 이 사건이 발생한 거제 옥포에서는 35만 원 선입니다.]을 신청하여 모텔로 앉았는데, 로즈는 경험이 없어 그 남성과 ***이 먼저 성관계를 하고 남자가 잠이 든 사이 모텔을 빠져나와 이미 탈출에 성공한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 소장과 촬영기자가 와서 나를 구조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로즈 모두 외출금지, 수시로 가해진 협박을 비롯한 클럽의 관리체계에 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로즈는 자신이 한국에 들어온 목적과 너무 다른 클럽의 상황에 놀라 먼저 탈출한 신청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지원단체에 의하여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엔젤클럽이 외출금지·별금제도·남자 매니저에 의한 감시와 관리·상시적 협박·성매매를 위한 바파인(Bar Fine) 제도 등 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들은 공항에서 바로 클럽으로 인계되어 한국 상황·지리·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들은

여권을 기획사에 압수당한 상태여서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증명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입국과정에서의 수수료, 클럽에서의 벌금 등의 채무를 부담한 채 월급을 세대로 받지 못하여 돈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물리적·유형적 장애 뿐만 아니라, 무형적·심리적 장애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와 의사가 억압된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1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는 한국에 관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몽골, 중국,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은 연예비자[연예홍행비자, 즉 E-6 비자를 말함]를 소지하고 한국에 들어온 후 주한 미군기지 주변 업소에서 가수나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다가 그 중 일부는 성매매의 도구로 인신매매되고 있다. 외국 출신의 성매매와 강제노역 피해자들 대부분은 고용주들에게 여권을 압수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이동까지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내용으로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위계를 통해 외국인 여성들을 입국 시켜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서 성접대와 성매매를 하게 한 매우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급증해 온 한국사회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의한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로서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조직적, 국제적 성격의 범죄이기도 합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근절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동종의 사건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더 자주 드러나고 세기될 것입니다.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범죄의 대표적 사건이 될 수 있는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하시어, 재판부에서 이 재정

신청을 면밀히 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지방검찰청 ○○지청 2009년 형제 ○○○○○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이유통지서 1부
1. 항고사건처분통지서 1부
1. 위임장 1부

2010. ○. ○.

신청인 나르다

○○고등법원 귀중

성산업에 유입된 Legal Guide for
외국인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발행일 2010. 12

발행처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전 화 031-611-9027

팩 스 031-611-9029

이메일 mysisterhome@hanmail.net

디자인/인쇄 인디엔피 www.indhp.com